

2026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업무지침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2026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업무지침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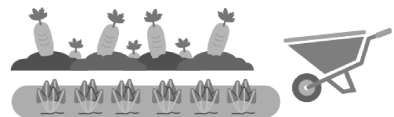
『2026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업무지침』 주요 개정 내역

일 자	주요변경 사항	내 용
2024.05.21	업무지침 신설	2024년부터 경영이양직불사업을 개편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추진
2025.01.15	일시지급형 도입	- 매도이양에 한하여 일시지급형 도입 - 경작허용면적 1,000㎡미만 신청자만 가능 - 분할지급 대비 최대 30% 감액
	시정촉구 절차 신설	- 사후관리 결과에 따른 시정촉구 절차 신설 - 시정촉구서, 시정독촉장(1차, 최종) 도입
	약정의 해지·해제 관련 개정	- 지급약정서에 보조금 지급정지 명시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임대농지 공사, 청년농 등 매도시 약정 해지·해제 없이 승계·변경 가능 - 상속으로 신규취득농지는 매도하는 경우에만 약정 승계·변경 가능
	매도조건부 임대 관련 개정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한 임대기간이 보조금 약정기간보다 짧을 경우 임대계약 종료 후 신규 임대계약 체결 또는 공사, 청년농 등에 매도 의무화
2026.04.01	가입기준 연령 기산일 변경	약정체결일→선정신청일
	영농경력 산정기준 변경	직전 10년 이상→합산 10년 이상
	약정변경 절차 명확화	약정변경신청서 징구 및 변경약정체결 절차 명시, 약정변경신청서 양식 추가
	신규취득농지 처분방안 확대	신규취득농지 기한내 (매도하는 경우에만 약정유지)→(매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로 처분방안 확대
	약정자 의사에 의한 해지(해제) 신청 절차 명확화	약정해지(해제)신청서 징구 및 약정해지(해제) 확인서 교부절차 명시, 약정해지(해제)신청서 양식 추가
	업무지침 전반 재작성	지침 이용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항목별 재구성 및 예시 추가

CONTENTS
목차

 2026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업무지침

제1장 사업개요	1
제2장 업무지침 내용	9
제3장 사업시행 절차	25
제4장 행정사항	43
❧ 관련서식	47
❧ 근거 법령	83



제 1 장

사업개요

세부사업명	[302] 농지이양은퇴직불	세 목	민간경상보조
내역사업명	[320-01] 경영이양직불	회계(계정)	[1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20-01] 농지이양은퇴직불	분야(부문)	[5] 농림수산(농업·농촌)
		프 로 그 램	[1000] 농가경영안정
	[320-01] 사업운영비	단 위 사 업	[1070] 농가소득보전(직불)

■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내용	65 ~ 84세의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 등에 매도하는 경우 직불금을 1 ~ 10년간 또는 일시에 지급
지원자격	연 령: 65 ~ 84세 영농경력: 신청일 전 10년 이상 영농 종사
지원내용	매 도: (분할) 연 600만원/ha, (일시) 4,200만원/ha 매도조건부임대: 연 480만원/ha

■ 경영이양직불

사업내용	65 ~ 74세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전업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하는 경우 직불금을 2 ~ 10년간 지급
지원자격	'21년부터 신규가입 중단
지원내용	매 도: 연 330만원/ha 임 대: 연 250만원/ha

■ 사업운영비

사업내용	농지이양은퇴직불 및 경영이양직불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경비, 홍보·교육비 등 지원
------	--

연도별 재정투입현황

재원구성 국고 100%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	2026	증 감	%
농지이양은퇴직불	28,968	29,661	693	2.3
농지이양은퇴직불	15,473	19,891	4,418	28.6
경영이양직불	9,284	5,966	△3,318	△35.7
사업운영비	4,211	3,804	△407	△9.7

담당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소득정책과	김규안 사무관	044-201-2824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김문기 차장	061-338-5912

1 목적 · 추진경과

1. 목 적

- 보조금 지급을 통한 고령농(만 65세 ~ 만 84세)의 조기 농지이양 및 은퇴 유도 및 이양받은 농지를 청년농에게 우선 공급하여 청년농의 영농 정착·규모화 지원

2. 추진경과

-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 자유무역협정(FTA) 확산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경영이양직불제 도입
 - ('97 ~ '20) '경영이양직불제'를 통해 고령농 108,011명으로부터 농지 81,050ha를 이양받아 전업농 등 76,422명에게 지원(1.06ha/인)
 - ('21 ~ '23) 비교적 낮은 단가 수준과 임대이양 중심의 운영 방식으로는 정책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모집 잠정 중단
 - ('24 ~) 이양방식, 단가 등을 개선한 '농지이양은퇴직불제'로 개편

〈 농지이양은퇴직불제도 변화 〉

	경영이양직불				농지이양은퇴직불
	'97 ~ '08	'09 ~ '14	'15 ~ '17	'18 ~ '20	'24 ~
신청연령	63~69세	65~70세	65세~74세		65세~84세
지급단가 (ha당)	매도 290만원 임대 298만원	매도·임대 300만원		매도 330만원 임대 250만원	매도: 분할지급 600만원, 일시지급 4,200만원 임대조건부매도: 480만원
지급기간	2~8년	2~10년			1~10년
경작 허용면적	1000㎡ 이하	3,000㎡ 이하			1,000㎡ 미만 * 단, 보조금 지급대상 외 농지 포함시 3,000㎡이하
지급대상 농지	농업진흥지역 논	농업진흥지역: 논·밭·과수원 농업진흥지역 외: 경지정리된 논·밭·과수원			
농지 공급대상자	60세 이하 전업농		64세 이하 전업농 50세 이하 일반농		청년농 우선 * 공급순위: ①청년창업형 후계농, ②2030세대, ③후계농, ④귀농인, ⑤일반농, ⑥전업농

2 근거법령

1.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국내지원정책의 시행)

- ②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 WTO협정에 따른 생산비연계 소득보조 〉

- 소득보조의 수혜자격은 명시되고 고정된 기준기간 중의 소득, 생산자 또는 농지 소유자로서의 지위, 생산요소의 사용 또는 생산수준 등과 같은 명백하게 정의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 특정년도의 소득보조액은 기준기간 이후 특정년도에 생산자가 행한 생산량 또는 생산형태(가축단위 포함)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정년도의 소득보조액은 기준기간 이후 특정년도에 행하여진 모든 생산에 적용되는 국내 또는 국제가격과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특정년도의 소득보조액은 기준기간 이후 특정년도에 사용되는 생산요소에 관련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소득보조를 받기 위하여 생산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3. 농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이양 및 농업 생산자원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5. 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업투입재의 비용 절감을 위한 지원

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전업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업농업인
 - 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
 -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 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후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
 - 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
4. “논·밭·과수원”이란 (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로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5. “농지이양”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논·밭·과수원을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0 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공사
 - 나.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등(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 다.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의 농업인(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10. “농업경영”이란 농업인등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및 농지이양 촉진을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는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제4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농업인의 은퇴 유도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에 농지이양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제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 ①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제9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농업인
 2. 선정신청일 전 농업경영기간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농업인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해지 또는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다만, 제13조제3호의 경우에는 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시·군 또는 자치구별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4.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교육 및 홍보 계획

② 공사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규모
2.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 대상자 및 대상 농지의 요건
3.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4.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3 성과목표 및 지표

성과지표	목 표	과거 실적			측정방식
		2025	2024	2023	
종합고객만족도(점)	90.4	89.7	89.4	88.3	당해연도 신규가입자 500명 대상 고객만족도 유선조사
약정사항 이행여부 현장점검 실적(건)	전수	3,773	3,474	3,719	농지이양직불 약정사항 이행 여부 현장점검 실적(필지)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백만원

	~ 2023	2024	2025	2026	2027 ~
합 계	989,787	30,500	28,968	29,661	계속
보 조	989,787	30,500	28,968	29,661	계속

제2장

업무지침 내용

1 사업 대상자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

1. 가입연령<개정 2026.04.01>

- 🕒 **매도:** 선정신청일 기준 만 65세(1961년생 중 생일 경과자) 이상 만 84세 이하 (1941년생 중 생일 미경과자)
- 🕒 **매도조건부임대:** 선정신청일 기준 만 65세(1961년생 중 생일 경과자) 이상 연 80세(1946년생) 이하

* 매도조건부임대는 은퇴직불과 농지연금(은퇴직불형)의 가입 요건을 모두 충족 필요

2. 영농경력<개정 2026.04.01>

- 🕒 선정신청일 전 영농기간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농업인
 - ※ 시행령 개정 당시 종전 규정 단서(질병·사고로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영농)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시행령 개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자격 유효
- 영농경력: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확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 농지대장(구 농지원부 포함), 농협 조합원가입증명서(준조합원 제외), 국민연금보험료경감대상 농업인 확인서류, 직불금 지급자료 등으로 확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불제 시행규정」

부칙 제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이 영 시행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농업인으로 본다.

2 직불금 지급요건

1. 지급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에게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약정”) 체결 전일까지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이외 나머지 농지를 적법한 대상에게 이양할 것
 - 농어촌공사에 ‘공공임대용농지매입사업’으로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는 공사 매입시점(소유권 이전일 기준)부터 보조금 지급
- ※ 가입 상한면적(40,000㎡) 초과 농지도 전부 이양 해야 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양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 약정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을 것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한 매도조건부임대의 경우「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6조 [별표]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이상 임대하여야 함
 - * 임대(임대위탁) 계약기간이 직불금 약정기간보다 짧은 경우, 임대(임대위탁) 계약 종료 전에 계약기간을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의 (잔여)약정기간 이상으로 하는 임대(임대위탁) 계약을 체결

【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의 가입 연령별 지급기간 】

약정체결일 기준 연령	만 75세 이하	만 76세	만 77세	만 78세	만 79세
직불금 지급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만 80세	만 81세	만 82세	만 83세	만 84세
	5년	4년	3년	2년	1년

2. 신청제한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음

- 경영이양직불 약정이 종료된 농업인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이 해제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 경작허용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여 약정이 해지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농업인
- 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임대위탁 계약이 농업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 약정 해지·해제로 발생한 환수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3 지급대상 농지

1. 농지의 종류

- ㉠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농지이양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밭·과수원
 - 농지이양 이전에 「농어촌정비법」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한 후, 3년 이상 계속 경작한 논·밭·과수원
 - * 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
 - 농지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밭·과수원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정리사업을 마친 논·밭·과수원
 - 농지가 30,000㎡ 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농어촌공사가 5년 이상 영농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논·밭·과수원
- ※ 위 지급대상 농지에 해당하여도 「맞춤형농지지원사업시행지침」에 따른 공공임대용농지매입 대상 농지가 아니거나, 다년생식물 재배 등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농업경영에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2. 농지의 소유기간<신설 2026.04.01>

- ㉠ 소유기간의 인정기준: 취득 당시 토지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이전일(접수일)부터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신청일 전일까지의 기간만큼 인정
- 매도: (매도이양 소유권 이전일) - (취득시 소유권 이전일)
- 매도조건부임대: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신청일 전일) - (취득시 소유권 이전일)

※ 상속·증여·환매의 농지소유 기간 산정 기준

- 상속: 피상속인 소유기간 + 상속인(본 사업 신청인) 소유기간
- 증여: 증여자 소유기간 + 피증여자(본 사업 신청인) 소유기간
- 환매: 농어촌공사에 매도 전까지의 소유기간 + 환매 받은 후 소유기간
(해당필지의 상속인, 포괄승계인도 포함)

* 예시) 고령농이 경영회생사업 참여를 위해 5년간 소유하였던 필지를 농어촌공사에 매도한 이후 사망하여 해당 필지의 환매권이 직계비속에게 상속된 경우, 상속인의 매도 전 소유기간인 5년을 피상속인에게도 인정

4

농지이양 방식

【 농지이양의 정의 】

- 이양 시점: 신청 당해 및 직전연도에 매도한 농지에 대해서만 가입 가능
- 이양 대상: 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 등(우선순위: ① 청년후계농, ② 2030세대, ③ 후계농, 귀농인, 일반농, 전업농, 농업법인)
 - 개인 간 매도의 경우에도 은퇴직불 직불금 대상자 선정 시 매수자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하며, 그 순위는 ①청년후계농업인 ②2030세대 ③후계농 ④귀농인 ⑤일반농 ⑥전업농, 농업법인 순
-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이양하는 것은 농지이양으로 인정하지 않음

1. 매도: 소유 농지를 농어촌공사 또는 청년농 등에게 직접 매도

- 📌 지분소유 농지는 해당 필지 전부를 매도할 경우에만 지분소유 면적만큼 농지 이양 인정
- 📌 여러 명에게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해당 필지 전부를 이양하여야 하며,
 - 농지이양대상에 해당하는 양수자(청년농업인 등)에게 이양한 면적만큼만 지급 대상면적으로 인정<신설 2026.04.01.>
- * 예시) 고령농이 보유한 농지(1,800㎡)를 A(청년농) B(비농업인)에게 각각 900㎡씩 공유지분방식으로 매각하는 경우 A에게 매도한 900㎡만 직불금지급 대상으로 인정

2. 매도조건부임대: 농업인 소유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일정기간(최장 10년) 임대 후 의무적으로 매도

- 📌 매도조건부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가입을 전제로 하므로, 「농지연금 업무처리요령」의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의 요건, 「맞춤형농지지원사업 업무지침」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 매도조건부임대 관련 사업 자격요건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영농경력의 총합이 5년 이상인 연60세~연80세의 농업인
- 맞춤형농지지원사업: 농업진흥지역 內 농지(논·밭·과수원), 진흥지역 外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 농지이양은퇴직불 지급 대상 농지 중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와 동일

5 경작 허용 농지

- 경작허용면적은 모든 종류의 농지(임대차 농지, 농지대장 미등록 농지 등) 면적을 포함하여 산정
- 지급대상 외 농지 중 개별법에 따른 각종 개발예정지역의 농지는 경작 허용면적의 제한을 받지 않음

1.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대상농지

- ㉠ 약정체결 시점에 소유하고 있는 1,000㎡ 미만의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계속 소유 및 경작 가능

2.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

- ㉠ 약정체결 시점에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대상 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총 3,000㎡ 이하까지 소유 및 경작 허용되나, 지급 총액에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
- 단, 이 경우에도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1,000㎡ 미만이어야 함
- ※ 약정자의 경작허용농지 내역을 약정서에 첨부하고, '농지이양은퇴직불 사업관리시스템 (농업e지)'에 등록하여야 함

※ 경작허용농지 등록방법

- 농업e지(www.nongupez.go.kr) 접속 → '농지이양은퇴직불' 선택 → '신청 선정관리' 항목의 '신청관리' 선택 → '신규신청' 선택 → '경작허용농지 등록'

【 직불금 지급대상농지 여부 】

토지구분	상세구분	지급대상
■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 기타	해 당
	- 농어촌공사의 맞춤형농지지원사업의 공공임대용농지 매입 불가판정 농지	미해당
■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 농지이양 이전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한 후, 3년 이상 계속 경작한 논·밭·과수원	해 당
	- 경지정리를 마친 논·밭·과수원	
	- 30,000㎡ 이상 집단화되어 있으며, 농어촌공사가 5년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논·밭·과수원	미해당
	- 기타	
■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닌 농지		미해당

※ 개별별에 따른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농지의 종류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 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포함되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의 사업구역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경우

6 직불금 지급시기 및 중지

1. 가입방식 및 지급시기

☞ **매도:** 필지별로 지급형태를 다르게 하여 가입 가능

- 분할지급형: 직불금 총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총 개월 수)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약정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 농지이양자(약정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일시지급형: 직불금 총액을 약정 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 15일에 농지이양자(약정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 매도이양 신청자 중 경작허용면적이 1,000㎡ 미만인 자만 일시지급형 가입 가능

☞ **매도조건부임대:** 농지연금 가입자, 맞춤형농지지원사업(공공임대용농지매입) 매입대상 농지소유자에 한하여 가입 가능

- 분할 지급만 가능하며, 약정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매월 15일 농지이양자(약정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2. 지급중지<신설 2026.04.01.>

☞ **지급 일시중지:** 약정의 해지·해제 사유 발생으로 시정촉구를 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을 일시적으로 중지

☞ **지급중지:**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약정 해지·해제 사유	시정조치	시정기한	지급재개
▪ 경작허용농지 외의 농지를 취득 및 경작 - 상속·증여로 취득 및 경작 - 임(사용)차하여 경작	▪ 신규취득 농지 매도 또는 증여 ▪ 임차계약 해지	시정촉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시정 완료 시
▪ 매도조건부임대 방식으로 이양한 농지의 임대차(임대 위탁 포함) 계약이 해지	▪ 임대차 계약 체결	시정촉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매도조건부임대 방식으로 이양한 농지의 소유권이 이전	▪ 약정자 명의 소유로 원복	시정촉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분할지급 약정자가 계약 기간 중 사망 〈개정 2026.04.01.〉	▪ 배우자의 약정 승계		승계 완료 시
▪ 매도조건부임대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 등의 영농에 중대한 지장 초래	▪ 원상회복	시정촉구일로부터 9개월 이내 또는 영농기 시작 전	시정 완료 시

7 직불금 산정

【지급단가 및 산정기준】

- 지급단가
 - 매도: 연 600원/㎡ (연 6,000천원/ha)
 - 매도조건부임대: 연 480원/㎡ (연 4,800천원/ha)
- 지급대상 면적: 최대 4ha (매도 및 매도 조건부 임대 면적을 합산)
- 산정기준: 필지별, 연 단위로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

1. 매도 및 매도조건부임대

- ④ 매도(분할지급형): 농지이양면적(㎡) × 지급단가 × 지급기간(년)
- ④ 매도(일시지급형): 농지이양면적(㎡) × 지급단가 × 지급기간(년) × 지급율
 - * 경작허용농지가 1,000㎡ 이상 3,000㎡ 이하인 경우는 일시지급형으로 지급 불가
- ④ 매도조건부임대: 농지이양면적(㎡) × 지급단가 × 지급기간(년)
 - ※ 지급단가, 가입연령별 지급기간은 매도와 동일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약정체결일 기준 연령	만 75세 이하	만 76세	만 77세	만 78세	만 79세
직불금 지급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만 80세	만 81세	만 82세	만 83세	만 84세
	5년	4년	3년	2년	1년

【일시지급형 지급율】

단위: 천원/㎡

가입연령	지급액(1ha~4ha)		지급단가		지급기간		지급율
만 75세 이하	42,000~168,000	=	6,000	×	10년	×	70%
만 76세	40,500~162,000	=	6,000	×	9년	×	75%
만 77세	38,400~153,600	=	6,000	×	8년	×	80%
만 78세	33,600~134,400	=	6,000	×	7년	×	80%
만 79세	30,600~122,400	=	6,000	×	6년	×	85%
만 80세	25,500~102,000	=	6,000	×	5년	×	85%
만 81세	21,600~86,400	=	6,000	×	4년	×	90%
만 82세	16,200~64,800	=	6,000	×	3년	×	90%
만 83세	11,400~45,600	=	6,000	×	2년	×	95%
만 84세	6,000~24,000	=	6,000	×	1년	×	100%

2. 가입상품 변경(분할지급형 → 일시지급형)에 따른 직불금 산정

📌 일시지급금: 농지이양면적(㎡) × 지급단가 × 지급기간(년)* × 지급율

* 지급단가: 연 600원/㎡ (연 6,000천원/ha)

지급기간 = 총 약정기간(월) - 분할지급금 기 지급기간(월)

【잔여지급기간별 지급율】

잔여 지급기간(월)	1 ~ 11	12 ~ 23	24 ~ 35	36 ~ 47	48 ~ 59
지급율	100%	95%	90%	90%	85%
	60 ~ 71	72 ~ 83	84 ~ 95	96 ~ 107	108 ~ 120
	85%	80%	80%	75%	70%

- 분할지급형 가입자는 1회에 한하여 일시지급형으로만 변경 가능하며, 경작허용 농지 규모가 1,000㎡이상 3,000㎡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지급형으로 변경 불가

* 변경절차: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약정변경신청서(별지 제23호 서식) 징구 후 변경약정체결(별지 제3호, 제3-1호 서식) <신설 2026.04.01.>

3. 경작허용농지 추가 이양에 따른 추가 직불금 산정

📌 분할지급형: 추가 농지이양면적(제곱미터) × 지급단가 × 지급기간(월)

* 지급기간(월) = 총 약정기간 - 경과기간(최초 약정일 다음달부터 추가 약정일 전월까지 기간)

- 이 경우, 변경된 내용(직불금액, 가입규모 등)으로 약정을 재체결하고, 시스템 (농업e지)에 반영한 후, 약정 재체결 익월부터 해당 내용으로 직불금 지급

- 단, 추가 직불금은 기존 약정 상 지급기간으로 한정

* 예시) A가 약정(면적: 10,000㎡, 금액: 월 50만원, 120개월) 체결 후, 직불금을 50개월 째 수령 하던 중 농지 1,000㎡를 추가 이양한 경우, 월 55만원 씩 70개월간만 지급

📌 일시지급형: 추가 농지이양면적(제곱미터) × 지급단가 × 지급기간(월)* × 일시지급형 대상 지급기간별 적용지급율

* 지급기간(월) = 총 약정기간(직불금 일시지급에 따른 약정의무준수기간) - 경과기간(최초 약정일 다음달부터 추가 약정일 전월까지 기간)

** 예시) A가 약정(면적: 10,000㎡, 금액: 4,200만원 일시수령) 체결 후 직불금을 수령하고 50개월 째 경과하던 중 농지 1,000㎡를 추가 이양한 경우 일시금으로 297만원 수령
(297만원 = 5만원 × 70개월 × 85%)

4. 既 직불금 수령자(해지·해제)가 재가입하는 경우 직불금 산정

☞ 새롭게 시작하는 약정 체결 당시의 연령별 지급기간에 따르나, 기지급기간과 연령별지급기간을 합하여 10년(12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 분할지급형: 농지이양면적(㎡) × 지급단가 × 재지급기간(년)
- 일시지급형: 농지이양면적(㎡) × 지급단가 × 재지급기간(년) × 일시지급형 지급율

【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의 재 지급기간 】

만75세이하(기본10년)		만76세(기본9년)		만77세(기본8년)		만78세(기본7년)		만79세(기본6년)	
기지급 기간	재지급 기간	기지급 기간	재지급 기간	기지급 기간	재지급 기간	기지급 기간	재지급 기간	기지급 기간	재지급 기간
9년	1년	9년	1년	9년	1년	9년	1년	9년	1년
8년	2년	8년	2년	8년	2년	8년	2년	8년	2년
7년	3년	7년	3년	7년	3년	7년	3년	7년	3년
6년	4년	6년	4년	6년	4년	6년	4년	6년	4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4년	6년	4년	6년	4년	6년	4년	6년	4년	6년
3년	7년	3년	7년	3년	7년	3년	7년	3년	
2년	8년	2년	8년	2년	8년	2년		2년	
1년	9년	1년	9년	1년		1년		1년	

(계속)

만80세(기본5년)		만81세(기본4년)		만82세(기본3년)		만83세(기본2년)		만84세(기본1년)	
기지급 기간	재지급 기간	기지급 기간	재지급 기간	기지급 기간	재지급 기간	기지급 기간	재지급 기간	기지급 기간	재지급 기간
9년	1년	9년	1년	9년	1년	9년	1년	9년	1년
8년	2년	8년	2년	8년	2년	8년	2년	8년	
7년	3년	7년	3년	7년	3년	7년		7년	
6년	4년	6년	4년	6년		6년		6년	
5년	5년	5년		5년		5년		5년	
4년		4년		4년		4년		4년	
3년		3년		3년		3년		3년	
2년		2년		2년		2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5. 경작허용면적에 따른 차감

☞ 경작허용농지가 1,000㎡이상 3,000㎡이하인 경우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액 만큼 차감하고 월별 직불금 지급액 결정 및 입금(10월 이후에 약정 체결시 미차감)

- 당해 은퇴직불액 130만원 초과 ⇒ 당해 직불액에서 130만원 선 차감 후 지급
 - ① 기본 직불금 미수령 ⇒ 선차감한 130만원을 당해 12월에 지급
 - ② 기본 직불금 수령 ⇒ 130만원에서 기본직불 수령액을 제하고 남은금액 12월에 지급
- 당해 은퇴직불액이 130만원 이하 ⇒ 당해 월별 지급액 없음
 - ① 기본 직불금 미수령 ⇒ 미지급된 은퇴직불액을 당해 12월에 지급
 - ② 기본 직불금 수령 ⇒ 당해 지급액 없음

8 약정 해지·해제 및 승계·변경

1. 약정 해지·해제

- ➡ **해지:** 경과한 약정기간은 유효하나, 장래 남아있는 약정은 종료
 - 약정체결 시 경작이 허용된 농지 이외의 농지 경작(임(사용)차 포함)
 - 직불금 분할지급 중 약정자 사망
 - 직불금 일시지급에 따른 약정 의무준수기간 중 약정자 사망
 - 매도조건부임대 약정 농지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소유권 변동
 - 매도조건부임대 약정 농지 임차인의 영농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
- ⇒ 약정의 해지사유 발생일 이후 지급한 직불금에 대하여 환수 필요
- ➡ **해제:** 약정이 처음부터 무효하여, 소급효 발생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 ⇒ 지급된 직불금 전액에 가산금(연 10%)을 더해 환수하고, 제재부가금 부과

2. 약정 승계 또는 변경<개정 2026.04.01.>

-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해제하지 않고 승계 또는 변경 가능
 - 매도조건부임대 약정 농지를 매도 방식으로 이양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임대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 매도조건부임대 약정 농지가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직불금 지급기간 중에 약정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
 - 매도조건부임대 약정 농지의 일부가 천재지변, 공익사업에 편입·전용, 농지 일부 소유권 변경 등으로 감소되었으나 나머지 농지는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 * 단, 감소된 약정 면적만큼 직불금 감액
- 매도조건부임대 약정 농지를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 상속·증여로 취득한 농지를 매도 또는 증여로 처분하는 경우

《 약정자 사망 시 배우자 승계 》

1. 직불금의 지급

- 가입자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만 직불금 지급하고, 매도조건부임대 약정농지가 배우자에게 상속 이전 등기된 이후에 직불금 지급 재개
 - * 사망에 따라 지급이 중지되었던 직불금은 상속 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지급
- 가입자의 배우자만 약정 승계 가능하며,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상속 또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면적에 대하여는 직불금 지급 중지
- 약정자 사망 전에 차감한 직불금은 약정을 승계한 배우자에게 지급하나, 약정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
 - *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공탁 가능

2. 배우자 승계 유의사항

- 약정자가 사망 시 배우자 또는 상속인은 지체 없이 농어촌공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승계 대상자는 사망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약정 승계 여부를 결정
- 약정 승계 전 경작허용농지 외 농지를 이양할 것
 - 약정을 승계받는 배우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포함하여, 1,000㎡ 미만*이어야 하며, 추가 이양하는 농지의 약정 종료일은 승계받는 약정종료일로 함
 - * 다만, 소유농지 중 지급대상 외 농지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3,000㎡까지 허용
- 약정 승계 당시, 임(사용)차 중인 농지가 없을 것
- 매도조건부임대 약정 농지는 배우자 상속이전 등기를 완료할 것
- 농지이양은퇴직불 약정을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 승계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추가이양 할 수 있으며, 이 때 추가이양 농지의 약정종료일은 승계받는 약정종료일로 함

9 직불금 환수 및 절차

1. 직불금 환수

- 🕒 **약정을 해제한 경우:**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직불금에 대해서는 지급한 다음 날부터 환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의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

※ 환수액 산정 방법

- 분할지급형 = 기지급총액 + 가산금($\sum_{i=1}^{\text{마지막 회차}} i \text{회차지급액} \times \frac{\text{환수일} - i \text{회차지급일}}{365} \times 0.1$)
- 일시지급형 = 기지급총액 + 가산금($\text{지급액} \times \frac{\text{환수일} - \text{지급일}}{365} \times 0.1$)

- 🕒 **약정을 해지한 경우:**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을 중단하고, 해지 사유가 발생한 이후 지급한 직불금을 환수

※ 환수액 산정 방법

- 분할지급형 = 약정해지 사유 발생일 이후 지급된 직불금액
- 일시지급형 = 기지급총액 $\times \frac{\text{약정 종료월} - \text{약정 해지사유 발생월}}{\text{총 약정 개월수}}$

- 🕒 **제재부가금:** 직불금 환수액(가산금 포함)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 부과
- 제재부가금액은 농림축산식품부 ‘직불금부정수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제재부가금의 부과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처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2 >

위반행위	부과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직불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직불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 환수 절차

㉠ 세부 환수절차

- 약정해지(해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약정자에게 직불금의 반환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금을 반환하도록 안내
- 약정자가 직불금을 30일 내에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아래와 같이 조치
 - 반환독촉장을 3회에 걸쳐 매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발부하고, 납부기한은 독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반환독촉을 받고도 직불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법적 조치(가압류·가처분 등)로 채권을 확보하고 농어촌공사의 「소송업무처리규정」에 따라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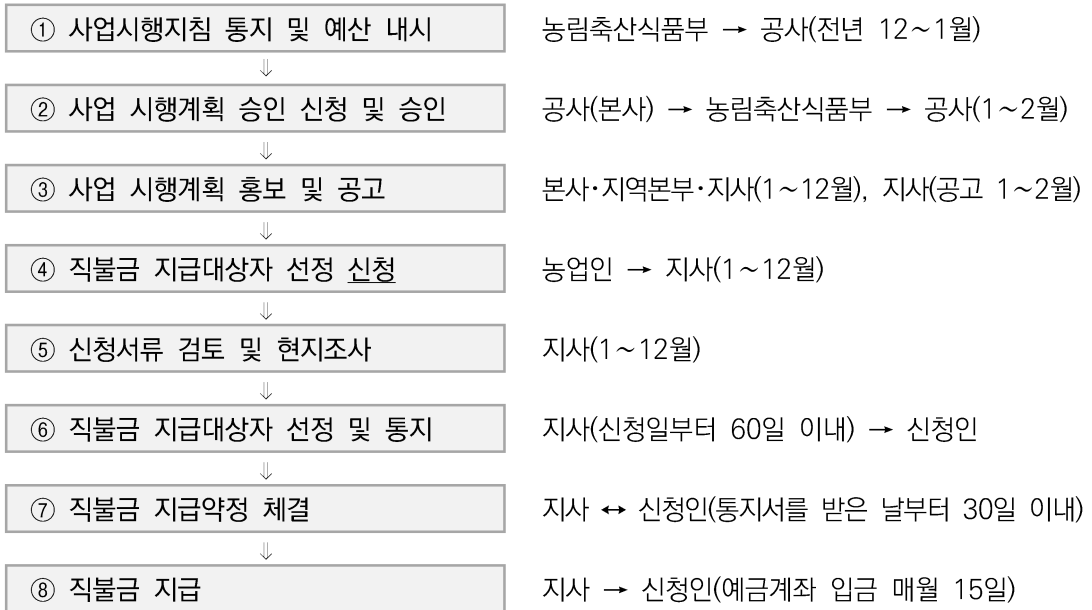
㉡ 종전규정에 따른 직불금 지급약정자에 대한 특례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정」(대통령령, 시행 2024.3.26., 이하 “개정규정”) 시행 이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임대 또는 임대위탁에 한함)을 체결하고 경영이양직불금의 지급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는 개정규정에 따라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할 수 있음(이하 “사업 변경 신청”)
- 공사는 사업 변경 신청을 한 자가 개정규정에 따른 농지이양 은퇴직불금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새롭게 체결할 수 있음(이 경우 종전의 경영이양직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새롭게 체결한 자의 지급기간은 개정규정에 따른 연령별 지급기간에서 이미 지급된 기간을 월 단위로 산정하여 제외한 기간으로 함

제3장

사업시행 절차

1. 사업시행 체계도



2.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 본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내시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사항이 포함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1.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 요청
 - 사업의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
 - 시·군 또는 자치구별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교육 및 홍보 계획 등
- ➡ 본사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지역본부를 경유하여 지사에 시행계획을 통보 하여야 하며, 지사는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시·군·구, 읍·면·동 또는 지사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지사장은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의 개요를 시·군·구, 읍·면·동 또는 지사의 게시판 등에 10일 이상 공고
 - 사업비(직불금)의 규모
 - 직불금 신청 대상자 및 대상 농지의 요건
 -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직불금 지급의 방법 및 시기

- 그 밖에 직불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사업의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
- ④ 본사, 지역본부 및 지사는 시행계획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시·군 홍보지 등에 게재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고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2월)
- ④ 지역본부는 본사에서 통보된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지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사는 통보된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자체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시행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본부(지사)별 사업목표
- 사업 세부 추진계획
- 시·군·구별 지급대상 인원 및 소요예산
- 기타 사업시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사항

3. 지급대상자 선정신청

- ④ 신청방법 <신설 2026.04.01.>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公社 지사에 제출
- 농업e지(www.nonguphez.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④ 신청서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④ 구비서류
- 매매계약서 사본 1부(청년농업인 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담당직원은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농업경영체증명서를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 공사에 농지이양 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를 생략 함(매매 또는 임대 시 제출한 서류 사본으로 대체함) 다만, 약정체결 당시 농업경영체에 미등재된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 후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신청시기 : 연중 신청 가능 (당해년도 직불금 예산 소진시 신청기간 조기 종료)

- ④ 신청장소 : 농지이양대상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사
 - 농지이양대상 농지소재지가 다수인 경우 농지이양대상 농지면적의 총합이 큰 지사에서 일괄 신청
- ④ 접수대장 관리 :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지급대상자 선정 및 경과 통지

- ④ 지급대상자 선정 기한
 - 지사장은 직불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류 및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6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신청서류 검토
 - 신청서 기재사항 누락 또는 구비서류 내용과 일치 여부
 - 지급대상자 및 대상농지의 지급요건 적합 여부
 - 연령 및 영농경력 적정 여부
 - 지급신청농지 지목, 면적 등 지적공부와 일치 여부
 - 농지이양 후 경작허용농지 유무 및 허용면적 초과 여부
 - 임대차(사용대차) 농지 유무 여부
 - 신청 농지의 각종 개발계획사업의 예정지(지역·지구·단지·구역 등) 지정(결정) 여부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등을 통한 잔여소유농지 확인
 - 개인 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 제출 여부[별지 제1호 서식 하단]
- ④ 현지조사
 - 신청인의 자격 조사
 - 신청인의 연령, 영농경력, 실거주지, 가족관계 등 일치 여부
 - 신청인이 농지이양을 하려고 하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거나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 농지이양후 경작허용규모(1천 제곱미터)등 잔여농지 일치 및 경작허용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 신청인이 농지를 임차(사용차 포함)하여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 신청인의 직불금 수령 및 영농규모화사업 자금 등 지원 여부
 -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지급대상 농지 조사
 - 농작물 경작 또는 휴경 여부
 - 지적도, 토지대장 등본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대비 일치 여부
 -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 받기반정비사업 시행 여부
 -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3만 제곱미터 이상 농지 집단화 및 농업기반시설 완비 여부
- 농지 양수대상자(매입·임차 자) 조사
 - 직불금 지급농지 양수대상자의 연령, 경영규모, 영농경력 등 자격구비 여부
-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신청자 현지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

📌 지급대상자 선정결과 통지

- 지사장은 신청자의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 실시한 후 지급대상자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30일 이내에 지급약정을 체결하도록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지사장은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자에게 제외사유를 통보(별지 제7호 서식)하여야 하며,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음

5. 지급약정 체결

- 📌 지사장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농지이양 은퇴직불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별지 제21호 서식)”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 후 서명날인하여 징구
- 📌 지사장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서(표준안)”(별지 제3호, 제3-1호 서식)에 따라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약정 체결
 <개정 2026.04.01.>
 - 약정체결 시기
 - 매매(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매입농지 포함)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이후
 -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일시경작자의 경우 일시경작기간 종료 이후 1회차 직불금 지급
 - 임대(임대위탁)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가입 및 임대차(임대위탁) 계약체결 이후
 - 지급약정서에는 직불금 지급총액, 지급대상 농지의 표시, 직불금 지급기간, 경작 허용농지 경작, 지급약정의 해지(해제), 직불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지급약정 체결 후 이양방법 변경(임대에서 공사동의 후 농지매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으로 변경 등) 및 공공사업 편입으로 일부 면적 감소 등 당초 약정 내용과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한 임대(임대위탁)기간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6조[별표]에 따른 “농지이양은퇴 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을 모두 포함하는 약정기간 이상을 임대(임대위탁)하여야 함.

【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

약정체결일 기준 연령	만 75세 이하	만 76세	만 77세	만 78세	만 79세
직불금 지급기간	10년	9년	8년	7년	6년
	만 80세	만 81세	만 82세	만 83세	만 84세
	5년	4년	3년	2년	1년

- 임대(임대위탁) 계약기간이 직불금 약정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임대계약 종료 후 잔여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약정 기간 이상으로 하는 임대(임대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여야 하며, 임대·매도계약 체결 전까지 직불금 지급을 중단한다.
- 임대(임대위탁) 계약 종료 후 공사,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잔여 농지이양 은퇴직불금 약정기간에 대한 약정을 변경할 수 있다.

6. 직불금 지급 및 결과 보고 등

- ㉠ 지급일자 : 지급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 15일 단,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
- ㉠ 지급방법 : 매월 지급약정자가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 보고사항
 - 본사는 매 분기별로 사업추진실적을 분기 익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8호 서식)
 - 부서별 보고시기
 - (지사→지역본부) 분기 익월 5일까지, (지역본부→본사) 분기 익월 10일까지
- ㉠ 직불금 수령자 관리
 - 지사장은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수령자 개인별관리조서”(별지 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7. 사후관리

📌 경영이양직불금 및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수령자 사후관리 조사

- 조사시기 :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연중)
- 조사대상 : 전년도 12월까지 경영이양직불금 및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인으로서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약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및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2017년도 이후 경영이양약정자로 약정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영농은퇴기간(만 8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이 종료되지 않은 자

* 일시지급형 농지이양은퇴직불금 가입자의 직불금 일시지급에 따른 약정 의무준수기간 포함

- 조사내용
 - 경영이양직불금 및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지급 받은 자의 사망 여부
 - 경영이양직불금 및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지급받은 후 농지이양한 농지를 자경하는지 여부
 - 농지이양후 계속 경작이 허용된 농지 이외의 농지를 임차(사용차 포함)하여 경작하는지 여부
 - 농지이양 한 논·밭·과수원의 임대(임대위탁)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여부
 - 임대(임대위탁)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소유권 이전 여부
 - 임대(임대위탁)이양한 논·밭·과수원에 공작물 설치 및 형질 변경 여부
 - 농지이양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등의 영농에 지장을 주는 행위 여부
 - 2017년 이후 경영이양 약정자로 약정기간 종료 후 영농은퇴기간(약정자가 만 80세가 되는 해)까지 영농복귀 여부
 - 기타 사후관리 적정 여부
- 조사방법
 - 농지대장 확인
 - 본인, 이장, 지역주민 등에 대한 청문조사 및 현지조사
 - 읍·면·동의 주민등록전산자료 확인
 - 지적전산자료(본사제공) 활용 소유권 이전 등 여부 확인
 - 공익직불금 등 타 직불금과 중복수령 여부 확인

※ 위 조사결과 농지이양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 및 지급요건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 촉구 절차를 거치고 시정 기간 내 미시정 된 경우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함

- 조사결과 조치

• 시정촉구

* 시정촉구서 : 위반사실을 안날로부터 7일 이내 위반사유별 시정 기한을 정하여 발송(별지 제18호 서식)

* 시정촉촉장(1 차) : 위반사유별 시정기한일 60일 전까지 발송(별지 제19호 서식)

* 시정촉촉장(최종) : 위반사유별 시정기한일 30일 전까지 발송(별지 제20호 서식)

※ 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는 시정촉구서가 시정촉촉장(최종)을 대체

• 유형별 조치

유 형	촉구내용	시정기한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소명	■ 소명기한 : 10일 이내
② 직불금 지급 약정체결시 경작이 허용된 농지 이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 ㉡ 임차(사용대차 포함)하여 경작하는 경우 * 매매는 경영이양직불만 해당	㉠ 매매, 상속, 증여 : 취득 농지 매도·증여 등을 통한 미경작 ㉡ 임차(사용대차 포함) : 임차계약 해지를 통한 미경작 * 매매는 경영이양직불만 해당	■ 6월 이내
③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농지이양한 논, 밭, 과수원의 임대차(임대위탁을 포함)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임대차 계약 체결	■ 1년 이내
④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 밭, 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 등기부상 소유자명의 원상 회복	■ 6월 이내
⑤ 분할지급 약정자가 직불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개정 2026.04.01.>	■ 약정 승계	■ 사망시점 6월 이내
⑥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농지이양 한 논·밭·과수원에 공작물 설치, 기타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등의 영농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 원상복구	■ 9월 이내에서 다음 영농기 시작전까지

※ 단,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 밭, 과수원의 소유권 변동이 농지 이양에 해당하여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 시정조치 완료처리

※ 일시지급 약정자가 약정의무준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시정촉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약정해지 <신설 2026.04.01.>

• 시정촉구를 통보한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을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 시정기간 내 시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미지급한 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사후관리 대상자 관리

- 지사장은 매년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약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및 해당연도 1월 1일 현재 2017년도 이후 경영이양직불 약정자로 약정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영농은퇴기간(만 8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이 종료되지 않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농지이양 사후관리 조사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일시지급형 농지이양은퇴직불금 가입자의 직불금 일시지급에 따른 약정 의무 준수기간 포함

㉡ 조사결과 보고

- 해당연도 사후관리 조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별지 제10호 서식)
- 보고시기 :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 지 사 → 지역본부 :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 지역본부 → 본 사 : 다음연도 1월 15일까지

㉢ 타 직불금 중복수령 예방조치

- 농지이양 자가 직불금 지급약정 체결 당시 계속 경작이 허용된 농지이외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또는 경작하지 않고 ‘타 직불금’을 신청·수령하여 중복 수령자로 제재를 받지 않도록 농지이양 약정체결 시 및 타 직불금 신청기간 도래하기 전에 안내문(붙임 16호 서식) 발송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은퇴영농기간 준수

- 2017년도 이후 경영이양직불금 약정자는 계약 종료 후, 은퇴영농기간을 준수 했는지 확인하여야 함.

8. 제 재

㉠ 지급약정의 해제 및 해지<개정 2026.04.01.>

- 약정내용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직불금 지급요건 등을 위반하거나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 촉구 절차를 거치고 시정 기간 내 미시정 된 경우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 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 직불금 지급약정 계약체결 시 경작이 허용된 농지 이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농지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농지이양 한 논·밭·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 약정의 상대방이 직불금지급기간 또는 약정 의무준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농지이양 한 농지에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기타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등의 영농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 다만,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기간은 종료되었으나, 영농은퇴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경고 및 약정의무를 이행(6개월 이내) 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정을 해제해야 함

※ 해지 또는 해제여부 판정

- 농지이양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유권이 변동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제 사유로 보되, 고의성 등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
- 약정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농지이양은퇴직불금에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환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

📌 지급약정의 해제(해지) 통보

- 지사장은 시정촉구에도 불구하고 시정기간 내 시정이 되지 않은 경우 약정해지(해제) 예정일 2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약정의 해지(해제)내용 및 이의신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 (제재내용) 지급약정 해제 : 신청제한 5년, 지급약정 해지 : 신청제한 3년
- 직불금 지급 일시중지
 - 약정해지(해제)를 통보한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을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 지급약정 해지(해제) 통보의 취소
 - 직불금 수령자가 지급약정의 해지(해제) 통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지사장은 확인(자체심의)한 후 정당하면 지급약정의 해지(해제) 통보를 취소하고, 미지급한 직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단순 변심 등 농지이양 약정자 본인의 확인·동시에 따라 지급약정의 중도 해지(해제)를 신청한 경우 약정해지(해제) 신청서를 징구하고(별지 제22호 서식) 약정해지(해제) 확인서를 작성하여 약정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26.04.01.>

㉠ 지급약정의 해제(해지)에 따른 직불금 환수

- 약정의 상대방(농업인)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해제한 경우 :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직불금에 지급한 다음 날부터 환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
- 약정을 해지한 경우 : 직불금 지급을 중단하고,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지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해지일 까지 지급한 직불금 환수

㉡ 직불금 환수 절차

- 직불금 반환통지 : 지급 약정 해지(해제)일로부터 7일 이내(별지 제13호 서식)
- 직불금 반환기한 : 지급약정 해지(해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반환독촉장 발부 : 직불금 반환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은 3회에 걸쳐 납기 경과 후 7일 이내에 발부하며, 납부기한은 독촉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반환독촉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절차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고 공사의 “소송업무처리규정”에 의하여 제소 등 법적 조치.

㉢ 제재부가금 부과·징수

- 관 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제1항
- 보조금 반환 의무가 발생한 경우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수령자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제재부가금은 농림축산식품부 ‘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제재부가금 부과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처리함

9.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준수

- ㉠ 업무처리 담당자(결재권자 포함)는 사업신청 및 계약(변경, 해지를 포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신청자 또는 계약자가 업무처리 담당자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사적이해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인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분임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 및 회피 신청하여야 한다
- 분임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은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제2조에 의한 자를 말한다.

참고 1

농지이양 은퇴직불 연계사업 신청 및 계약서류



구 분	사업명	신청서류	계약서류
1-1. 매도 (공공임대 농지매입)	공통서류	- 토지대장(임야대장) ※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으로 대체가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경영체증명서) ※ 경영주 변경이력 포함, 경영체말소확인서로 대체 가능) - 통장사본	-
	농지이양 은퇴직불	- 공공임대용농지매입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으로 대체가능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 지적도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농지대장 - 진단서(질병·상해로 인해 은퇴하려고 전매동의를 받은 지원자)	- 등기필증 - 등기이전을 위한 이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 위임장(본인이 아닌 경우) - 토지상 제 권리의 말소를 증명하는 서류(법원의 결정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정서) - 납세 필증 등(조세완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증 - 인감도장
1-2. 매도 (개인간 매도)	공통서류	-	-
	농지이양 은퇴직불	- 농지매매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토지대장(임야대장) ※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으로 대체가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으로 대체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경영체증명서) ※ 경영주 변경이력 포함, 경영체말소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통장사본	-

구 분	사업명	신청서류	계약서류
1-3. 매도 (농지매매)	공통서류	- 토지대장(임야대장) ※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으로 대체가능 - 토지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가족관계증명서 - 통장사본	-
	농지이양 은퇴직불	- 농지매매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으로 대체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 경영체증명서) ※ 경영주 변경이력 포함, 경영체말 소확인서로 대체 가능)	-
	농지매매	- 신분증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2-1. 매도 조건부 임대 (임차임대)	공통서류	- 토지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통장사본	-
	농지이양 은퇴직불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계약서 - 임차임대 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토지대장(임야대장) ※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으로 대체가능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으로 대체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 경영체증명서) ※ 경영주 변경이력 포함, 경영체말 소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 경영체증명서) - 농지대장	-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은퇴형 임차임대	- 신분증 - 토지대장 - 농지대장	- 등기권리증(근저당설정시) - 인감증명서(근저당설정시) - 주민등록등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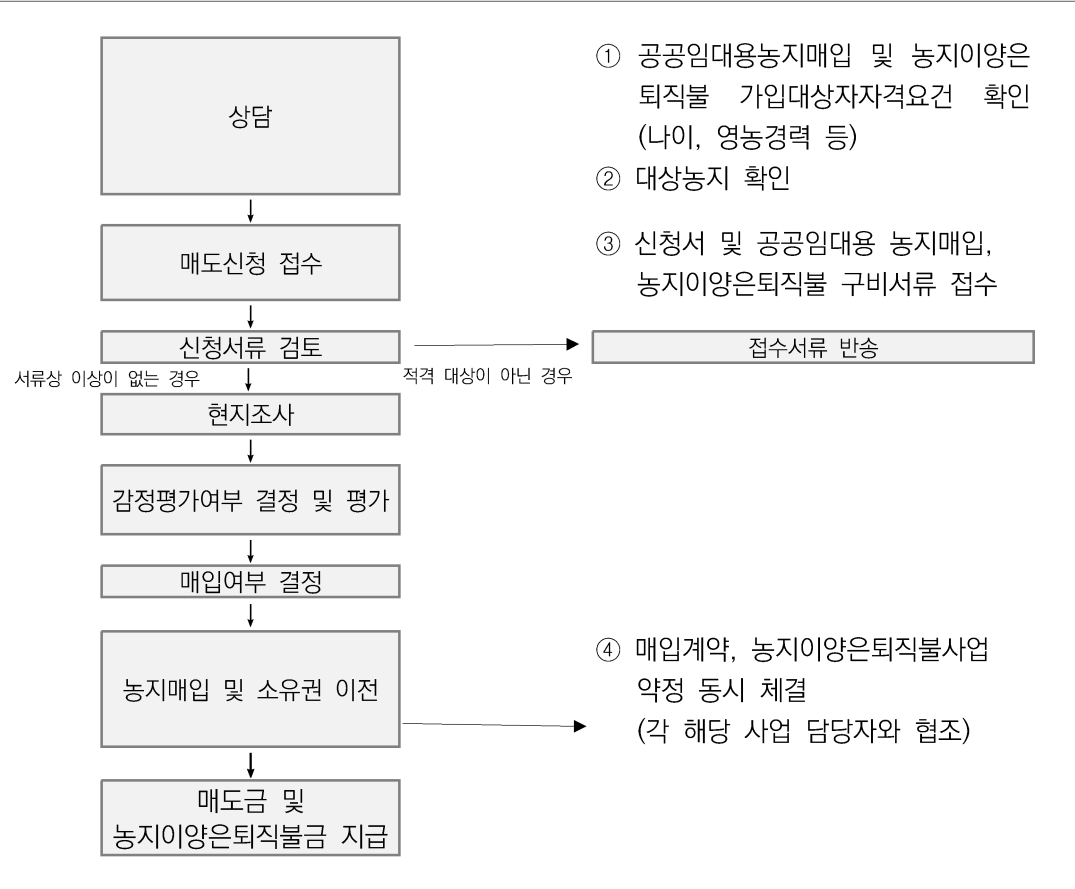
구 분	사업명	신청서류	계약서류
2-2. 매도 조건부 임대 (임대수탁)	공통서류	- 토지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통장사본	-
	농지이양 은퇴직불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계약서 - 임대수탁 계약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토지대장(임야대장) ※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으로 대체가능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부동산종합증명서 등으로 대체가능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 경영체증명서) ※ 경영주 변경이력 포함, 경영체말 소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 신분증 - 주민등록초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 경영체증명서) - 농지대장	- 등기관리증 - 인감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수탁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참고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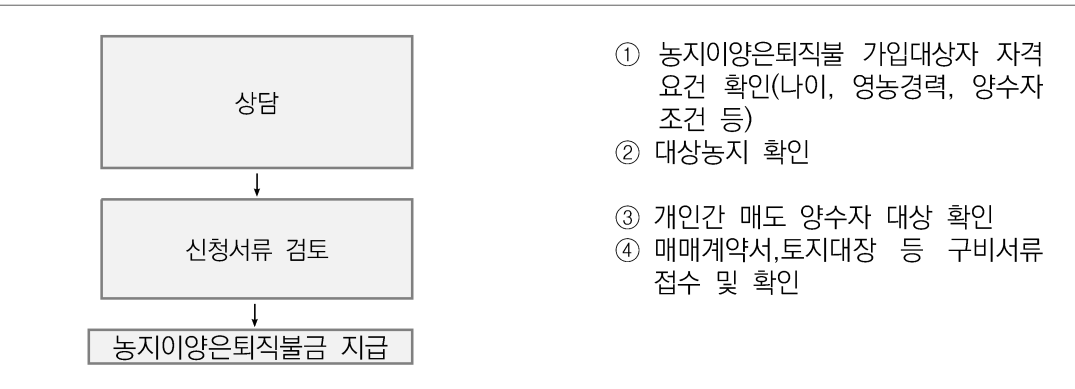
농지이양 은퇴직불 및 연계사업 업무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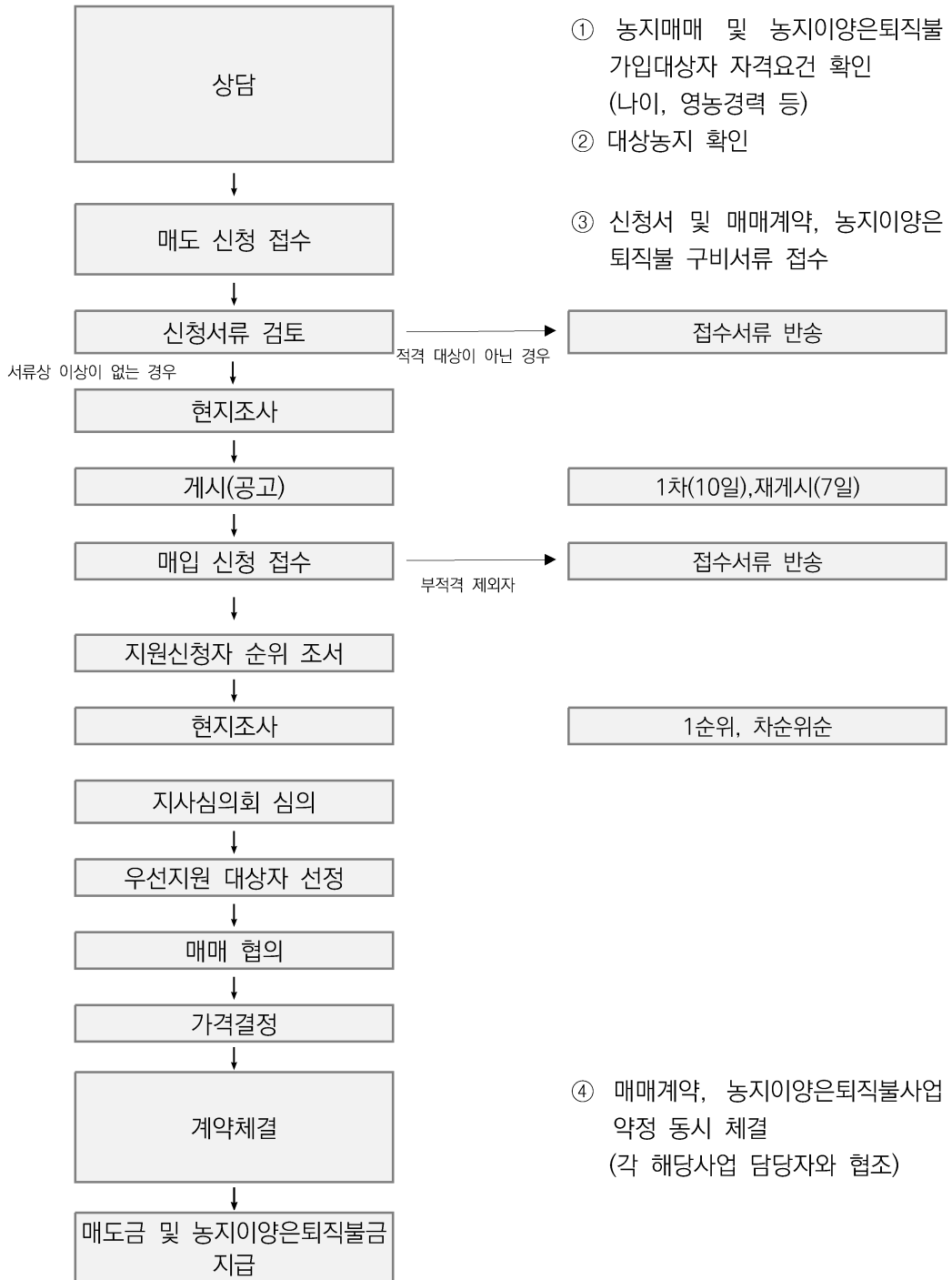
1-1. 농지이양 은퇴직불 매도이양 추진절차(공공임대용 농지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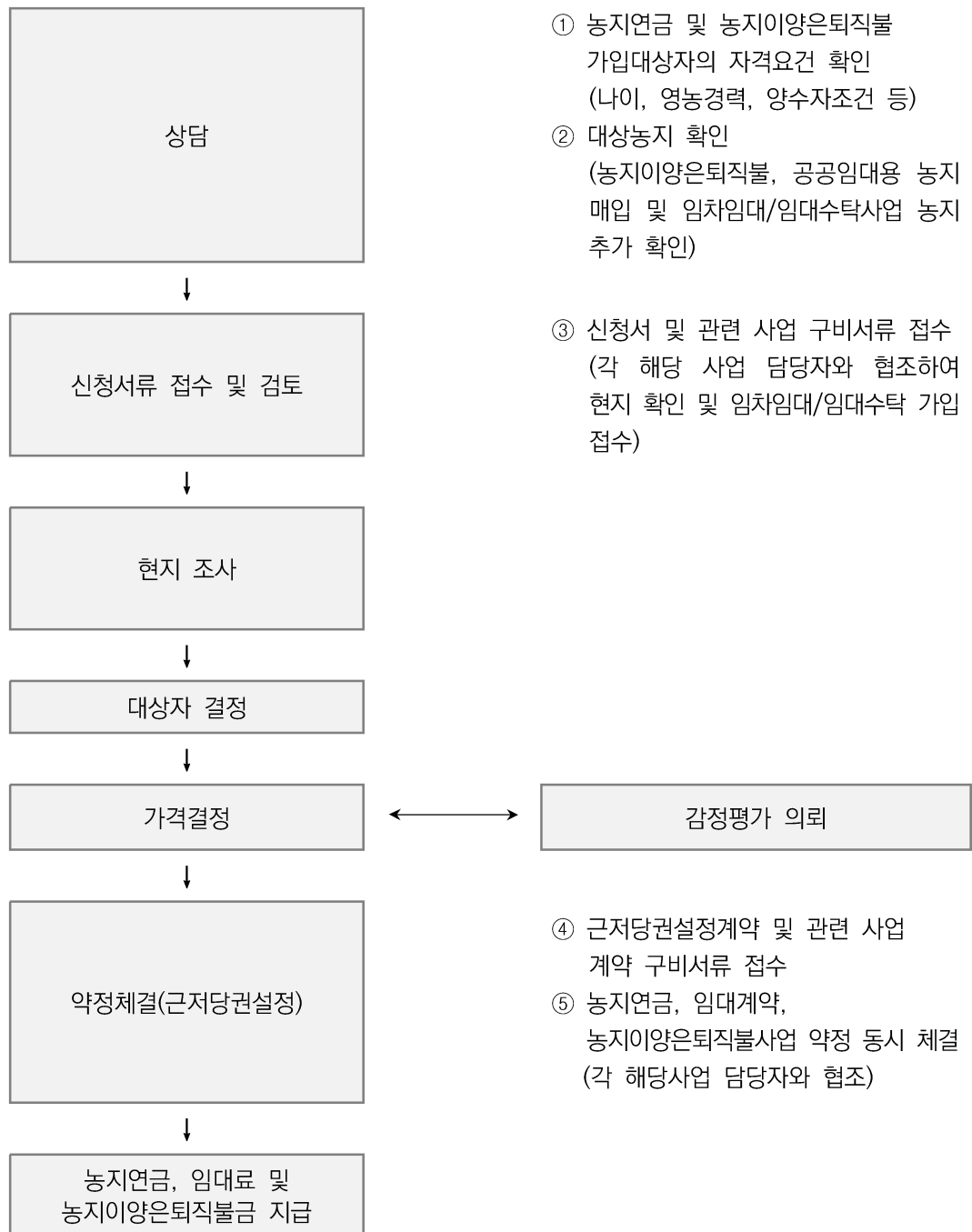
1-2. 농지이양 은퇴직불 매도이양 추진절차(개인간 매도)



1-3. 농지이양 은퇴직불 매도이양 추진절차(농지매매)



2. 농지이양 은퇴직불 매도 조건부 임대 추진절차(농지연금, 임차임대·임대수탁)



제4장

행정사항

1.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 ☞ 공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익년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결산보고서 자료 제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정책관)이 정하는 결산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익년 1월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

3. 환수금 처리

- ☞ 사업결과 발생하는 환수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납

※ 단, 해당연도에 신규로 집행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비에 충당할 수 있다.

4. 전산관리

- ☞ 보조금을 지급 받은 자 등에 관한 자료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5. 신청자 정보공개

- ☞ 공사는 보조금 신청자에 대한 정보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15일 이상 공사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정보공개 범위 등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에 따른다.

- 신청자 정보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15일 이상 공개

- 수령자 정보 : 매월 보조금을 지급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15일 이상 공개

6. 지침의 해석에 관한 사항

- ☞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이 관련법령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훈령²⁾에 위배되는 때에는 법령 또는 훈령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짐

주1) 관련법령: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가회계법」 등 예산회계 관계 법령,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등

주2) 「농림축산식품사업 실시규정」, 「농림축산식품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 (경영이양직불사업)



【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유의사항 】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 농지이양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
 - 신청인이 농지이양을 하거나 하려는 논·밭·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거나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 신청인이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였거나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 신청인이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신청인이 농지이양을 하거나 하려는 논·밭·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거나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하거나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수령하는지의 여부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약정자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복 수급 방지
 - 소유농지 중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를 포함하고 있어 경작허용면적이 3,000m² 이내인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가능
 - 단,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하고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
 - 9월 이전에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약정을 체결한 농지는 공익직불금 신청불가
(개정 2026.04.01.)
 - *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대상농지를 실경작을 하지 않았으나 공익직불금이 잘못 신청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 또는 신청 변경 기간 내에 공익직불금 신청 취소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약정(매도 조건부 임대) 승계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약정을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상속이전 등기 완료시까지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지하며, 상속이전 등기 완료한 이후부터 기존 농지이양 은퇴보조금 지급약정서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배우자가 승계하는 경우 '경작허용 농지'로 등록한 농지 및 승계자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합산하여 1,000m² 미만이어야 하는 등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함

관 련 서 식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

신청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			

구 분	농지 소재지			지 번	공부상 지목	면적 (㎡)	농업 진흥 지역	소유자	경작 구분	농지 이양 방법	비고
	시 · 군	읍 · 면	리 · 동								
지급신청 농 지											
	지급신청 농지 면적 계										
잔여소유 농 지											
	잔여소유 농지 면적 계										
임차경영 농 지											
	임차경영 농지 면적 계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9조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신청인 첨부서류	1. 농지대장 등본 1부 2. 매매계약서 사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청년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담당 직원 확인 사항	1.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말합니다) 2.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경영정보시스템
제출기관	농지소재지 관할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근거 법조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및 제1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신청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담당 직원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자격 및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의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 중 제1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위 확인사항 중 제2호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확인 가능한 서류임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 직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청년농동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지방 농업정책 지원, 농업·농촌 사회 안정망 지원 등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직접지불금 등 농업보조금 정보 및 그 밖에 농업정책 안내 정보를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의 지급대상자 등록 심사, 보조금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에 따른 농지은행사업 등을 위해 제공·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거부

※ 위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약정이 종료 또는 해제(해지)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약정 종료 또는 해제(해지) 후에도 보조금 등 수혜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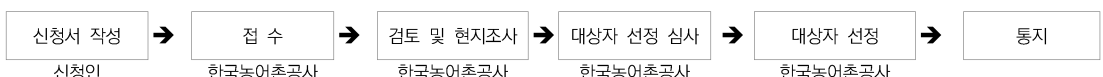
※ 위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농지이양은퇴 보조금의 지급,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융자·보조금의 지원이나 맞춤형 농업정책 지원, 농업정책 안내 서비스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1. “농업진흥지역”란은 농업진흥지역인 경우 “○”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 “×”로 표시합니다.
2. “소유자”란에는 등기사항증명서상의 소유자 성명을 적습니다.
3. “경작구분”란에는 자경·임대·임차·위탁·사용대·사용차 또는 휴경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농지이양방법”란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 가. 지급신청 농지: 공사매도, 개인매도, 공사임대(농지연금상품), 공사임대위탁(농지연금상품)
 - 나. 임차경영 농지: 경작권 종료, 경작권 이양, 경작권 포기

처리 절차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급대상 농지	농지 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농업진흥지 역여부	농지이양 방법
			공부	실제			
지급약정 체결	약정체결 기한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장소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준비할 사항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귀하께서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한 내에 약정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5.01.15.>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서(표준안)

(분할지급_신규, 재 약정)

1. 농지의 표시 및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 등

○ 지급대상 농지 : <별첨>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 조서 및 청구서' 참조

○ 보조금 지급액

- 총지급액 : 금 원(W)

- 월지급액 : 금 원(W)

○ 보조금 지급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총 년[월])

위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를 “갑”이라 하고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2. 약 정 내 용

제1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갑”은 위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이 약정체결 후 “을”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농지 중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조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차감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차감 방식은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5.01.15.>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이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부터 보조금 지급기간 동안 매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③ 보조금은 “을”이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2조(경작허용농지 경작 및 추가 이양) ① “을”은 「별첨」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조서 및 보조금 청구서’에 따라 “갑”이 계속 경작을 허용한 소유농지 중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약정체결 당시 개인 간 임대 농지, 농지대장 미등재 농지 포함, 소유농지 중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6조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 및 개별법에 따른 개발 예정지역 내의 농지 이외에는 계약기간 동안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을”과 지급약정 체결 시 계속 경작을 허용한 농지 중 1천 제곱미터 미만(약정체결 당시 개인 간 임대 농지, 농지대장 미등재 농지 포함)의 농지에 한하여 “을”이 추가로 농지이양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 지급 연령에 따른 잔여 지급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다만, 이 약정 체결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이 약정 체결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제5조제3호에 따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약정의 해지·해제)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이 이 약정을 해지·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보조금지급을 정지하고 “을”에게 약정해지 예정일 20일전까지 통지하고 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01.15.>

1. “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을”이 보조금 지급 약정체결 시 경작이 허용된 농지(임차 또는 사용차한 농지를 포함) 이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3. “을”이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농지이양 한 논·밭·과수원의 임대차(임대 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이 해지된 경우
4. “을”이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임대 또는 임대위탁 한 논·밭·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5. “을”이 보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6. “을”이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농지이양 한 논·밭·과수원에 공작물 설치, 기타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등의 영농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아니하고 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조치 할 수 있다.

1. “을”이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임대 또는 임대위탁 한 논·밭·과수원을 매도로 농지이양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 또는 임대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2. “을”이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임대 또는 임대위탁 한 논·밭·과수원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 “을”이 보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배우자가 이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상속이전 등기를 완료한 이후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며, 상속 완료시 까지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지함. 또한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한 임대이양 약정 농지가 배우자 이외의 자에게 상속된 경우에는 해당 농지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
 4.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한 임대이양 약정농지의 일부가 천재지변, 공익 사업에 편입·전용, 농지 일부 소유권 변경 등으로 감소되었으나 나머지 농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감소 면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감액 지급함)
 5. “을”이 상속으로 취득한 논·밭·과수원을 “갑”이 별도 안내한 기한 내에 매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개정 2025.01.15.> <개정 2026.04.01.>
 6. “을”이 증여로 취득한 논·밭·과수원을 “갑”이 별도 안내한 기한 내에 매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개정 2025.01.15.> <개정 2026.04.01.>
 7. “을”이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임대 또는 임대위탁 한 논·밭·과수원을 공사 또는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신설 2025.01.15.>
- ③ “을”이 제1항에 따라 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 통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갑”은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자체심의)한 후 이의제기가 정당하면 지급약정의 해제·해지 통보를 취소하고 미지급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15.>

제4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약정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이 정한 기한 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약정을 해제하고 “을”은 이미 수령한 보조금 총액과 매월 수령한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향후 5년,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향후 3년간,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농지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임대위탁 계약이 농업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 향후 3년간 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2. 제3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을 때에는 “갑”은 약정을 해제하고 “을은” 이미 수령한 보조금 총액과 매월 수령한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15.>
3. “을”의 불가피한 사유로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이 경우 “을은” 약정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날(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지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한다. <개정 2025.01.15.>

② “을”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 의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에게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보조금에 추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한다.<개정 2025.01.15.>

제5조(통지의무) “을”은 제1조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의 변경
2. 제1조제3항에 따른 본인의 보조금 지급 예금계좌번호의 변동
3. 제2조제3항에 따른 약정 체결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

4.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에 따른 약정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6조(통지의 효력) ① “갑”은 “을”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송달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이 제5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갑”이 제1항에 따라서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을”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송달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이 “을”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경우에는 발송한 것으로 본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체결 당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할법원) 이 약정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과 당해 계약목적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 또는 “갑”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9조(정보의 제공 및 이용) 본 약정내용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임대기간에 대한 특약)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한 임대(임대위탁)기간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제6조 [별표]에 따라 “농지이양 은퇴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짧은 경우 임대계약 종료 후 잔여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약정기간 이상으로 하는 임대(임대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공사, 청년농업인 등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매도계약 체결 전까지 보조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5.01.15.>

제11조(지급약정 중도해지자 등의 사후조치) “을”은 “갑”과 체결한 지급약정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중도에 지급약정을 해지하였을 경우에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향후 보조금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12조(출생연월일 정정) ①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하며, 보조금 지급기간 종료시점을 재 산정하여 약정을 변경한다

“을”은 본 약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별 첨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 조서 및 보조금 청구서

년 월 일

“갑” 한국농어촌공사

지 사 장 (인)

“을”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지 제3-1호 서식] <신설 2025.01.15.>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서(표준안)

(일시지급_신규, 재 약정)

1. 농지의 표시 및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 등

- 지급대상 농지 : <별첨>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 조서 및 청구서' 참조
- 보조금 지급액 : 금 원(W)
- 보조금 일시지급에 따른 약정 의무준수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총 년(월))

위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한국농어촌공사를 “갑”이라 하고 을(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2. 약 정 내 용

제1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① “갑”은 위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이 약정체결 후 “을”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이 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월의 다음 월 15일에 지급한다. 다만, 15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③ 보조금은 “을”이 지정한 본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2조(경작허용농지 경작 및 추가 이양) ① “을”은 「별첨」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조서 및 보조금 청구서'에 따라 “갑”이 계속 경작을 허용한 소유농지 중 1천 제곱미터 미만의 농지[약정체결 당시 개인 간 임대 농지, 농지대장 미등재 농지 포함] 및 개별법에 따른 개발 예정지역 내의 농지 이외에는 계약기간 동안 농업경영에 종사할 수 없다.

② “갑”은 제1항에 따른 “을”과 지급약정 체결 시 계속 경작을 허용한 농지 중 1천 제곱미터 미만(약정체결 당시 개인 간 임대 농지, 농지대장 미등재 농지 포함)의 농지에 한하여 “을”이 추가로 농지이양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 지급

연령에 따른 잔여 지급기간 동안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다만, 이 약정 체결일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을”은 이 약정 체결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제5조제2호에 따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약정의 해지·해제) ① “갑”과 “을”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이 이 약정을 해지·해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약정해지 예정일 20일전까지 통지하고 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을”이 보조금 지급 약정체결 시 경작이 허용된 농지(임차 또는 사용차한 농지를 포함) 이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3. “을”이 보조금 일시지급에 따른 약정 의무준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② 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아래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을”이 상속으로 취득한 논·밭·과수원을 “갑”이 별도 안내한 기한 내에 매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개정 2026.04.01.>
2. “을”이 증여로 취득한 논·밭·과수원을 “갑”이 별도 안내한 기한 내에 매도 또는 증여하는 경우 <개정 2026.04.01.>

③ “을”이 제1항에 따라 약정의 해제 또는 해지 통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는 “갑”은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자체심의)한 후 이의제기가 정당하면 지급약정의 해제·해지 통보를 취소하고 미지급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약정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갑”이 정한 기한 내에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약정을 해제하고 “을”은 이미 수령한 보조금 총액과 이미 수령한 보조금에 대하여 보조금을 수령한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제1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향후 5년, 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향후 3년간 동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을”은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 의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에게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 보조금에 추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납부 하여야한다.

제5조(통지의무) “을”은 제1조에 따른 보조금을 수령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의 변경
2. 제2조제3항에 따른 약정 체결 이후 신규 취득한 농지
3. 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제6조(통지의 효력) ① “갑”은 “을”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에는 보통의 송달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② “을”이 제5조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통지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갑”이 제1항에 따라서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을”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송달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③ “갑”이 “을”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그 발신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경우에는 발송한 것으로 본다.

제7조(해석)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체결 당시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관할법원) 이 약정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 법원과 당해 계약목적물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 또는 “갑”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그 관할 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제9조(정보의 제공 및 이용) 본 약정내용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공무상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지급약정 중도해지자 등의 사후조치) “을”은 “갑”과 체결한 지급약정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중도에 지급약정을 해지하였을 경우에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않으면 향후 보조금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을”은 본 약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별 첨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 조서 및 보조금 청구서

년 월 일

“갑” 한국농어촌공사

지 사 장 (인)

“을”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별 첨〉〈개정 2025.01.15..〉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 조서 및 보조금 청구서

1. 지급대상자

농지이양자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배우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①	년 월 일 ()	①	년 월 일 ()
	주소			

2. 농지이양농지 및 보조금 약정내역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지급 유형	지급단가 (원/㎡)	보조금약정액 (원)		지급기간 (보조금 일시지급에 따른 약정 의무준수기간)	이양방법 (매매, 임대, 임대위탁)
						월액	총액	임대기간(농지연금)	
								년 월-년 월(년)	
								년 월-년 월(년)	
계									

3. 경작 허용 농지 현황

유형별		농지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경작여부		경작자	비 고 (임대기간)
						자경	임대		
1.	계속경작농지								
2.	임대농지								
3.	기타								
계		필지							
※계속 경작허용 규모 (1,000㎡미만)			㎡(논 , 밭 , 과수원)						

* 분할지급형의 경우 직불 신청인 소유농지 중 지급대상 농지가 아닌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작허용 규모는 3천㎡ 이하임(다만,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액만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차감 지급)

** 일시지급형의 경우 경작허용 규모는 1천㎡ 미만임

4. 보조금 지급 청구

- 예 금 주 : , 계좌번호 : (은행 :)

(년도)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접수대장

번호	접수일자	신청자 인적사항		이 양 신 청 농 지				이양 선정 농지		선정 제외농지			비 고
		성 명	생년월일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제외사유 ¹⁾	
2024-000													
계													
(비율%)								%	%	%	%		

※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지 않거나 일부 필지를 선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도 모두 접수대장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함

주1) 선정 제외사유

- 1. 신청연령이 아님
- 2. 영농경력이 부족
- 3. 보조금지급대상 농지가 아님
- 4. 농지 소유기간(법정) 부족
- 5. 기타(구체적인 제외사유는 별도 정리)

[별지 제6호 서식]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신청자 현지조사서

1.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년 월 일 ()
주 소	(전화 :)		
영농경력	실거주지	보조금 수령여부	농지은행사업 지원여부
년 ~ 년(년)			

2. 본인 및 가족 영농현황

구분	농지소재지		지번	지 목		면적 (㎡)	진흥 지역	경작 구분	경지 정리	영농 조건	취득일	농지이양 방법
	읍·면	리·동		공부	실제							
지급 신청 농지												
	계											
잔여 소유 농지												
	계											
임차 농지												
	계											
양수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영농규모(㎡)*임차농지 포함				청년농업인 여부		주 작 목			
			계	논	밭	과수						
		(세)										
조사자 의견												
조사자 직급 성 명 확인자 부장 성 명 년 월 일 (서명) (서명)												

* 잔여소유농지에 공사에 기 임대(임대위탁)하였으나 보조금 미수령 한 농지 등 모두 포함 작성함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제외 통지서			
1.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성별)	년 월 일 ()
주 소	(전 화 : - -)		
2. 지급신청 농지 : ○ 농지소재지 : 답 외 필지 m ²			
3. 지급대상자 선정 제외 사유			
○ 제외사유별 유형			
※ 관련 규정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 직접지불제 시행규정」 제 조			
◆ 제외사유별 유형 1. 신청제외대상자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2. 신청연령(만65 ~ 만84세) 미달 또는 초과 3. 영농경력(10년 이상) 미달 4. 보조금지급대상 농지(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생산기반시설 완비된 진흥지역밖 농지)가 아님 5. 농지 소유기간(3년) 미달 6. 기존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약정기간 동안 지급받고 약정종료된 농업인으로 제외 대상자 7. 기타(구체적인 제외사유는 별도 정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귀하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직인			

()년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추진실적(/4 분기)

(단위 : 인원 : 명, 면적 : ha, 금액 : 백만원)

구분	지역 본부	계 획				실 적								실적율(%)				
		년간		()분기까지		()분기까지(a)		() 분기(b)		누 계(a+b)			면적		금액			
		면적(A)	금액(B)	면적(C)	금액(D)	인원	면적(E)	금액(F)	인원	면적(G)	금액(H)	인원	면적(I)	금액(J)	(I/C)	(I/A)	(J/D)	(J/B)
합 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신규이양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분할지급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분기별 약정해지(해제) 내역은 별지로 작성 제출

[별지 제9호 서식]

출력일자: 년 월 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수령자 개인별 관리조서					관리 번호	○○-○○				
수령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주소					전화				
승계자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				
	주소					전화				
약정일		최초지급일			지급기간					
					년 월 ~ 년 월(개월)					
보조금 지급현황										
약정액	최종지급일	기 지급기간(월)	기 지급액(원)	잔여기간(월)	잔여액(원)					
이 양 농 지 내 역										
주소	지번	지목	면적 (㎡)	약정액(원)		이양방법 (매도/ 임대(농지연금상품)/ 임대수탁(농지연금상품))				
				연간	총액					
계										
사후관리 현황										
위반농지내역					조치내역					
토지 소재지	지번	위반 일자	위반 사유 ^{※1)}	면적 (㎡)	일자	내용 ²⁾	환 수 금(원)			가산금 (원)
							환수대상액	환수액	미환수액	

※1)은 ①거짓, 부정한방법으로 약정체결(가산금부과) ②경작허용농지 이외 농지경작 ③임대차 계약 해지·해제(자경, 공공용지편입 등) ④임대농지의 소유권 변동(공사 동의후 일반농업인 매도, 동의없이 무단전매 등) ⑤사망 ⑥영농지장 행위 등 ⑦기타(양수자 조건 미흡 등)

2)는 환수완료, 환수중, 지급중지, 승계, 변경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년도 사후관리 조사결과 보고서

가. 총 괄

(단위: ha, 백만원)

도별	지사별	사후관리 대상			사후관리 내역 총괄 (a+d)			조 치 내 역												비 고
								환수 완료									환수 진행중(d)			
								계(a=b+c)			약정해제(b)			약정해지(c)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합 계																				
〇〇본부	〇〇지사																			
〇〇본부	〇〇지사																			

* 사후관리대상 : 전년도 12월말 까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 농업인으로서 해당년도 1월 1일 현재 약정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나. 개인별 환수내역

(단위 : m², 원)

도별	지사별	성명	생년월일	사후관리 유형별 내역			사후관리 농지 내역				환수 내역			미환수액 (a-b)
				해지 (해제) 구분	유형별 사유 ①	조치내역별 ②	약정 체결일	이양구분 (매매/임대/ 수탁)	면적	환수대상액 (a)	계	보조금 (b)	가산금	
합 계														
○○본부	○○지사	○○○												
○○본부	○○지사	○○○												

※1)은 ①거짓, 부정한방법으로 약정체결(가산금부과) ②경작허용농지 이외 농지경작 ③임대차 계약 해지·해제(자경, 공공용지편입 등) ④임대농지의 소유권 변동 (공사 동의후 일반농업인에 매도, 동의없이 무단전매 등) ⑤사망 ⑥영농지장 행위 등 ⑦기타(양수자 조건 미흡 등)

2)는 환수완료, 환수중, 지급중지, 승계, 변경

[별지 제11호 서식]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승계 확인서												
농지이양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년 월 일 ()					
	주 소						사망일자					
약정내역	약정일			최 초 지급일			지급기간					
							년 월 ~ 년 월(연)					
	약정액 (원)					약정 기간						
	계		기지급액		잔여액		계		기지급월		잔여지급월	
이양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약정액(원)		피상속인	상속 (예정)일			
	읍면	리동				연간	총액					
승계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계좌번호		(은행명 :)									
본인은 한국농어촌공사와 이(가) 체결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서의 모든 내용을 준수(승계)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승계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승 계 인 (서명 및 날인) *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한국농어촌공사 ○○ 지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5.01.15.>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 해지(해제)통지서

귀하께서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서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리공사가 시정·소명을 촉구하고 독촉한 바 있으나, 시정치 않아 약정의 (해지·해제)를 통지하오니, 만약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약정의 (해지·해제)예정일 전일까지 우리 공사에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2025.01.15.>

1. 약정 해지(해제)사유 :
2. 위반일자 :
3. 약정 해지(해제) 대상농지

약정해지 또는 해제 대상농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내역(원)		
농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해지 면적(㎡)	월지급액	총지급월	총지급액
계	필지					

4. 약정 해지(해제) 예정일자 : 년 월 일

5. 약정해지(해제)에 따른 불이익

-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이미 지급받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약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약정이 해제될 경우 반환할 보조금에 대하여 연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조금의 반환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반환예정액 : 총 원(기지급보조금 원 + 가산금 원)
(해지예정일자기준)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직인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중단 및 반환 통지서

귀하께서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서 제3조제1항제 호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약정을 (해지, 해제)하고 보조금을 (지급중단, 환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1. 해지(해제)일자 : 20 . . .
- 2. 지급중단 및 환수근거 : 약정서 제 조
- 3. 반환하여야 할 금액

반 환 금 액(원)			비 고
기지급 보조금	가 산 금	계	

※ 가산금은 아래 납부기한까지 산출한 금액이며 납부기한 전 또는 납부기한 후에 납부할 때에는 그 일수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산출방법

가산금 = 월별 기지급 보조금 × $\frac{\text{반환일까지의 일수}-1\text{일}}{365\text{일}}$ × 10%

- 4. 반환금 납부기한 : 년 월 일까지
- 5. 반환금 납부장소 :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직인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26.04.01.>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 해지(해제) 확인서

1. 약정자 현황

성명		생년월일(성별)	년 월 일 ()
주소	(전화번호 :)		

2. 약정 해지(해제) 대상농지

약정해지(해제) 대상농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내역(원)		
농지소재지	지목	약정면적 (㎡)	약정일	월지급액	총지급월	총지급액
계	필지					

3. 약정 해지(해제) 사유 :

4. 약정 해지(해제)일자 : 년 월 일

귀하께서 20 년 월 일 체결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이 본인의 신청에 따라
중도에 해지(해제)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직인

귀하

[별지 제15호 서식]

농지이양자 사후관리 조사서												
농지이양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년 월 일 ()					
	주소				전화번호							
약정내역	최초 약정일				지급기간		년 월 ~ 년 월(연)					
	약정액(원)						약정기간(월)					
	계	기	지급액	잔여액	계	기	지급월	잔여	지급월			
이양농지	농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약정액(원)		이양방법 (매매/임대(연금 상품)/수탁(연금 상품))	비 고			
	읍면	리동				월액	총액					
사후관리 결과	조사 항목					이행여부 및 조치현황						
						위반여부		조치 내용				
	① 거짓·부정한 방법 약정체결 여부					○, ×						
	② 경작허용이외 농지 경작 여부											
	③ 임대차 계약해지·해제 여부 (자경, 편입, 전매등의 등)											
	④ 임대이양 농지의 소유권 변동여부											
	⑤ 약정상대방 사망여부											
	⑥ 공작물설치 등 임차인 영농 지장 여부											
⑦ 기 타												
환수 등 조치내역	농지소재지	지번	면적	일자	환수 ¹⁾ 유형	환수내역(원)						
						일자	내역 ²⁾	환 수 대상액	환수액	미환수 액	가산금	
조사자 의 견												
20 년 월 일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1)은 ①거짓, 부정한방법으로 약정체결(가산금부과) ②경작허용농지 이외 농지경작 ③임대차 계약 해지·해제(자경, 공공용지편입 등) ④임대농지의 소유권 변동(공사 동의후 농지이양, 동의없이 무단전매 등) ⑤사망 ⑥영농지장 행위 등 ⑦기타(양수자 조건 미흡 등)

2)는 환수완료, 환수중, 지급중지, 승계, 변경

[별지 제16호 서식]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수령자에 대한 안내문

“ 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농지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귀하 (주소 :)

□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 체결 현황

농지 현황			약정 현황		경작허용 농지 (필지, m ²)	비 고
농지 소재지	지목	면적 (m ²)	약정일	약정기간		
				20 . . . ~ 20 . . . ()년		

※ 경작허용농지(필지, 면적)는 지사에서 실제현황을 파악하여 기재할 것

안녕하십니까? 항상 우리 농업과 농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는 농업경영에서 은퇴하는 고령농업인(65~84세)에게 농지 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하는 1997년부터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들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실경작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이는 소유자나 임차자 등 실경작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농업경영에서 은퇴하였을 경우에 지급하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과는 상반된 개념의 보조금이므로 농지이양 후 경작이 허용된 농지(1천제곱미터 미만)외에는 두 가지 직불금을 중복하여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공사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농지이양한 농지를 본인이 경작하고 있거나 또는 경작허용농지 외의 타인의 농지를 임차(사용차)하여 경작하였을 때에는 지급약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어 약정을 해제하고 보조금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유의하시어 지급약정을 성실히 이행하여 주시고, 약정체결 시 농지이양후 계속 경작이 허용된 농지 외에는 공익직불금을 중복 신청하여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농업과 공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직불금 부정 수령자에 대한 제재 사항〉

사업별	약정위반 및 부당 수령 사례	제재 사항
농지이양 은퇴 보조금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 ○ 농지이양한 농지를 본인이 경작 ○ 경작허용농지 외 타인의 농지를 임차(사용차) 경작 등	○ 지급약정 해제(약정자 귀책) - 지급보조금 총액과 연10% 가산금 - 반환 보조금 총액의 5배 범위내의 제재부가금 ○ 지급약정 해지 - 사유발생일 이후 약정 해지 일까지 지급한 보조금 회수 - 반환 보조금 총액의 5배 범위내의 제재부가금 부과
공익 직불금	○ 실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소유자 명의로 직불금 신청 ○ 경영이양한 농지를 이장이 관행적으로 소유자 명의 신청 ○ 실 경작하지 않는 타인(자식, 친척 등)의 농지에 대해 본인 명의로 직불금 신청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시 5년간 등록제한 ○ 부당이득금 회수 및 가산금 2배 부과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 시 보조금 지급중단 및 기 지급보조금 환수, 향후 3년간 사업참여 제한 및 해당 마을에 대해 제재 조치(마을공동기금 감액 또는 지급중단)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2025.01.15.>

시 정 촉 구 서

우리 공사와 귀하가 년 월 일 체결한 농지이양 은퇴보조금 지급약정계약에 있어서 귀하에 대한 지급약정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한 결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서 제3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바, 금회에 한하여 ○○년 ○월 ○일 까지 시정·소명을 촉구하오니 조속히 시정·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시정기한까지 시정·소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오니 각 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하신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 우리 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반내용 :

2. 위반일자 :

3. 약정체결농지 및 지급내역

약정체결농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내역(원)		
농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해지 면적(㎡)	월지급액	총지급월	총지급액
계	필지					

4. 시정촉구에 따른 불이익 및 불응시 조치계획

- 시정, 소명완료시까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전부(또는 일부)영산을 반환하여야 하고, 약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약정이 해제될 경우 반환할 보조금에 대하여 연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조금의 반환 의무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직인

귀하

(별지 제19호 서식) <신설 2025.01.15.>

시 정 독 촉 장(1차)

귀하께서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서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소명 촉구를 한바 있으나, 시정 또는 소명하지 않아 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정·소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하신 경우에는 ○○년 ○월 ○일 까지 우리공사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위반내용 :
- 2. 위반일자 :
- 3. 약정체결농지 및 지급내역

약정체결농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내역(원)		
농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해지 면적(㎡)	월지급액	총지급월	총지급액
계	필지					

- 4. 시정독촉에 따른 불이익 및 불응시 조치계획
 - 시정, 소명완료시까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약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약정이 해제될 경우 반환할 보조금에 대하여 연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조금의 반환 의무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직인

 귀하

(별지 제20호 서식) <신설 2025.01.15.>

시 정 독 촉 장(최종)

귀하께서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서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정·소명 촉구를 한바 있으나, 시정 또는 소명하지 않아 최종독촉하오니 ○○년 ○월 ○일까지 시정·소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치 않을 경우에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서 제3조제1항에 계약을 해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 위반내용 :
2. 위반일자 :
3. 약정체결농지 및 지급내역

약정체결농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내역(원)		
농 지 소 재 지	지 목	면 적 (㎡)	해지 면적(㎡)	월지급액	총지급월	총지급액
계	필지					

4. 시정독촉에 따른 불이익 및 불응시 조치계획

- 시정, 소명완료시까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고, 약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약정이 해제될 경우 반환할 보조금에 대하여 연 1할의 이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보조금의 반환 의무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할 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지사장

직인

귀하

[별지 제21호 서식] <신설 2025.01.15.> <개정 2026.04.01.>

농지이양 은퇴직불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이 설명서는 농지이양 은퇴직불 약정 체결 하는 분이 알아 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공사 직원이 설명하는 내용에 대해 듣고 이해하신 경우 자필 확인란에 자필 서명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입자 준수사항

☐ 농지이양 은퇴직불 지급약정을 체결한 후 아래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약정이 해지·해제 될 수 있습니다.

- 지급 약정체결 시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이외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 지급약정 체결 시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의 추가, 대체는 불가합니다.
- 신규 농지를 매매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 다만 상속, 증여로 취득된 농지는 매도, 증여할 경우 해지·해제하지 아니하고 약정변경이 가능합니다.
※ 약정체결일 이후 농지를 신규취득 하신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통지하셔야 합니다.
-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을 통해 농지이양한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자 필 서 명

2 “매도”의 경우 “일시경작” 관련

☐ 공공임대용 매입 사업으로 은퇴이양 약정체결 후 한국농어촌공사와 가입자 본인을 임차인으로 하는 일시경작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첫 지급 시기는 일시경작 계약기간 종료 익월 15일 첫 지급(1회차)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자 필 서 명

3 월 지급금“차감”에 관한 내용 설명

☐ 약정체결 후 소유농지 중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의 면적이 1,000㎡이상 3,000㎡ 이하의 경우 기본형 공익직불금 수령액(130만원) 만큼 선차감하고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 매월 차감금액 :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당해연도 지급월수로 나눈 금액
- 기본형 직불금 미수령시 : 당해연도 12월에 선차감한 은퇴직불금을 일괄 지급
- 기본형(소농) 직불금 수령시 : 추가 지급액 없음
- 기본형(면적) 직불금 수령시 : 당해연도 12월에 130만원과 면적직불금 수령액의 차액을 일괄 지급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자 필 서 명

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내용 설명

☐ 약정체결농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여부 등은 가입자 본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 등을 통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자 필 서 명

20 년 월 일

신 청 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설 명 자 : 직급_____, 성명_____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2호 서식] <신설 2026.04.01.>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해지(해제) 신청서

1. 약정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성별)	년 월 일 ()
주 소	(전화번호 :)		

2. 약정 해지(해제) 신청농지

약정해지(해제) 신청농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내역(원)		
농 지 소 재 지	지 목	약정면적 (㎡)	약정일	월지급액	총지급월	총지급액
계	필지					

3. 약정 해지(해제) 신청사유 :

본인은 20 년 월 일 체결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을 본인의 확인하에 중도 해지(해제)를 신청합니다. 이후 이 약정을 해지(해제)함으로써 시행규정 제5조 제2항 및 지급약정서 제11조에 따른 향후 보조금 지급신청 대상자에서 제외되어도 이익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별지 제23호 서식] <신설 2026.04.01.>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약정변경신청서

1. 약정체결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성별)	년 월 일 ()
주 소	(전화번호 :)		

2. 약정변경 신청내역

변경신청농지				변경신청(지급방법) 내역	
농 지 소 재 지	지 목	약정면적 (㎡)	약정일	당초	변경
계	필지				

본인은 20 년 월 일 체결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에 대한 약정변경을 본인의 확인하에 신청합니다. 이후 약정을 변경함으로써 발생하는 보조금 지급액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근거 법령

I 주요법령 및 지침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제5호

[시행 2007.12.14.] [법률 제8681호, 2007.12.14., 일부개정]

제11조 (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①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생산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2. 영세농(零細農) 등을 위한 보조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耕種農)에 대한 보조
4.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9조 제3항 제3호 및 제5호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8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39조(농업경영체의 경영안정 및 구조개선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경영체의 소득·경영안정 및 농업의 경영구조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개정 2015.6.22.>

1. 토양 등 환경의 보전과 지구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원
2. 농업 재해 및 농업 활동에 따른 인적 재해 등에 대한 지원
3. 농업 경영의 규모화, 고령 농업인의 농업 경영 이양 및 농업 생산자원의 폐기·감축 등을 위한 지원
4. 농업 여건이 낙후된 지역에 대한 지원
5. 농업 생산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 보조 및 농업투입재의 비용절감을 위한 지원
6. 특정 품목과 직접 연계되지 아니하는 농가 단위 소득 보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 2026 농림축산사업시행지침(농지이양은퇴직불제) (농림축산식품부)

☞ 2026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 업무지침 (한국농어촌공사)

II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8681호, 2007.1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이행할 때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고 이 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2조(경제주권의 보장)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어느 조항도 세계 자유무역 체제의 일원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정당한 경제적 권익을 침해 하는 것을 용납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07.12.14.]

제3조 (협정상 의 권익 확보) ① 정부는 협정의 기본원칙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행한다.
② 정부는 협상의 결과가 협정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거나 협정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클 경우 협정 절차에 따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협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4조(보조금에 대한 조치)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협정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보조금 등에 의하여 수출을 하는 경우에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5조(민족내부거래) 남북한 간의 거래는 민족내부거래로서 협정에 따른 국가 간의 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6조(특별긴급관세) 농림수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국제가격이 뚜렷이 하락하는 경우에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讓許)한 세율을 초과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제7조(농림수산물 관세 및 수입이익금의 용도) 협정 이행으로 인한 농림수산물 관세와 수입이익금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민 소득 향상과 농어촌 발전 등을 위하여 사용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8조(국민건강의 보호) 정부는 식품, 그 용기, 그 밖의 수입물품에 「검역법」, 「식품위생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의 법령으로 정하는 세균·병해충 또는 유해물질 등이 포함되어 있어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1. 그 수입물품

2. 그 수입물품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
3. 그 수입물품을 제조·가공한 제조원의 유사 물품

제9조(환경의 보호)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사람·동물의 건강이나 식물의 성장을 해칠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정부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이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제10조(수입 기관의 지정) 정부는 농림수산물의 수입으로 인하여 관련 국내 농림수산업이 위축될 위험이 큰 물품에 대하여는 협정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지방 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수입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14.]

제11조(국내지원 정책의 시행) ①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수출품에 대한 신용보증과 수출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협정에서 허용하는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협정 발효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농림수산업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정이 허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생산 통제를 목적으로 한 직접지불
2. 영세농(零細農) 등을 위한 보조
3. 토양 등 환경보전을 위한 유기농, 경종농(耕種農)에 대한 보조
4. 농림수산업 재해에 대한 지원
5. 생산과 연계되지 아니하는 소득보조[전문개정 2007.12.14.]

제12조(생산자단체의 농림수산물 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농림수산물 수급조절 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에게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收買)·비축(備蓄)·가공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제13조(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의 실시) 정부는 협정 이행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업의 구조조정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협정 발효 후 사업 시행 내용을 연 1회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부칙 <제8681호, 2007.12.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92	제1조(목적) 92
제2조(정의) 92	제1조의2 삭제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95	
제3조의2(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 95	
제2장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제4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95	제2조(농지이양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95
제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97	제3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97
	제3조의2(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97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98	제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98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99	제5조(농지이양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99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산정기준) 101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기간) 101
	제6조의2(농지이양 면적의 상한) 101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101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102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102
제10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103	
제11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104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104
제1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104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104
제13조(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105	
제1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 등) 106	
제1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107	
제3장 삭제	
제16조 삭제	
제17조 삭제	
제18조 삭제	
제1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2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21조 삭제	제12조 삭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제22조 삭제 제23조 삭제 제3장의2 삭제 제23조의2 삭제 제23조의3 삭제 제23조의4 삭제 제23조의5 삭제 제23조의6 삭제 제23조의7 삭제 제23조의8 삭제 제4장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제5장 · 제5장의2 삭제 제24조 ~ 제40조의10 생략 제6장 보칙 제41조(보고) 109	제12조의2 삭제 제12조의3 삭제 제12조의4 삭제 제12조의5 ~ 제26조 생략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제42조(소요경비의 지급) 110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10 제44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113 제45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 114	제27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113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 보조 등 각종 지원제도를 국가경제의 수준과 농업정책의 방향 및 국가 재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0. 8., 2009. 11. 26., 2009. 12. 14., 2011. 2. 25., 2012. 6. 22., 2013. 3. 23., 2013. 5. 31., 2014. 3. 18., 2015. 4. 7., 2015. 6. 1., 2015. 8. 3., 2015. 12. 22., 2016. 5. 3., 2018. 3. 20., 2024. 3. 26.>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인등”이란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이하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전업농업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전업농업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24. 4. 15.>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나.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라.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후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 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농업인으로 한정한다) 3의2.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4. “논·밭·과수원”이란 농지(휴경 중인 농지는 제외한다)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地目)이 전·답·과수원인 토지를 말한다. 5. “농지이양”이란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논·밭·과수원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10제2항제3호에 따른 농지연금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농업인이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가. 공사 나. 64세 이하의 전업농업인등(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다. 매수일 직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50세 이하의 농업인(매도자인 농업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 6. 삭제 <2020. 4. 28.> 6의2. 삭제 <2020. 4. 28.> 6의3. 삭제 <2020. 4. 28.> 7. “조건불리지역”이란 농업 생산성 및 정주(定住) 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지역을 말한다. 8. 삭제 <2020. 4. 28.> 9. 삭제 <2020. 4. 28.> 10. “농업경영”이란 농업인등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11. “초지”란 「초지법」 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말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제3조(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가의 소득안정 및 농지이양 촉진을 위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한다. <개정 2024. 3. 26.> ② 제1항에 따른 직접지불제도(이하 “직접지불제도”라 한다)는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및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한다. <개정 2024. 3. 26.> [전문개정 2020. 4. 28.] 제3조의2(직접지불제도 적용대상) ①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변경등록한 농업인등으로 한다. ② 직접지불제도(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는 제외한다)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초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변경등록된 농지 또는 초지로 한다. <개정 2024. 3. 26.> [본조신설 2015. 4. 7.] 제2장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 제4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고령농업인의 은퇴 유도 및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경영의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기에 농지이양한	제2조(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는 공사가 대행한다. [전문개정 2024. 3. 26.]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지이양은퇴보 직접지불사업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6. 22., 2013. 3. 23., 2024. 4. 15.> 1. 사업의 목표 2.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시·군 또는 자치구별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인원과 그에 필요한 예산 4.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교육 및 홍보 계획 ② 공사는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의 개요를 농업인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5.> 1. 해당 연도의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규모 2.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 대상자 및 대상 농지의 요건 3.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4.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의 방법 및 시기 5.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 4. 15.]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제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①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1. 2. 25., 2013. 3. 23., 2015. 4. 7., 2024. 3. 26., 2026. 3. 31.> - 제9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이하 “선정신청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는 농업인 - 선정신청일 전 농업경영기간의 총합이 10년 이상인 농업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15. 4. 7., 2024. 3. 26., 2026. 3. 31.> -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그 해지 또는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업인.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 제14조제1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하는 금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농업인 [제목개정 2024. 3. 26.]	제3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연령) 영 제5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65세 이상 84세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7., 2024. 4. 15.> [제목개정 2024. 4. 15.] 제3조의2(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제한) 영 제5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제된 경우: 5년 - 영 제13조제1항제2호, 제3호(약정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약정이 해지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에 따른 사유로 약정이 해지된 경우: 3년 [본조신설 2015. 4. 7.], [제목개정 2024. 4. 15.]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22., 2013. 3. 23., 2024. 3. 26.> 1.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로서 농지이양 이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2.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밭·과수원 [제목개정 2024. 3. 26.]	제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등) ① 영 제6조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영 제6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논·밭·과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밭·과수원을 말한다. <개정 2009. 12. 15., 2012. 6. 22., 2013. 3. 23., 2024. 4. 15.> 1. 농지이양 이전에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처분한 간척농지를 매입(분할납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인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논·밭·과수원 2. 농지이양 이전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밭·과수원 가.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 정리사업을 마친 논·밭·과수원 나. 농지가 3만제곱미터 이상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로서 공사가 5년 이상 농업경영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논·밭·과수원 ③ 제1항 및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논·밭·과수원에 대하여 3년 이상 계속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3. 26.> - 제12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일까지 소유농지 중 다음 각 목에 따른 농지를 제외한 나머지 농지에 대한 농지이양을 완료할 것 가. 농가의 자가소비량 생산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의 농지 나. 해당 농지의 위치, 경지정리 상태 등 경작 여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 경작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농지	하여 소유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5. 4. 7.> - 상속받은 논·밭·과수원: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논·밭·과수원: 증여자의 소유기간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환매받은 논·밭·과수원: 해당 농업인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사로부터 임차하기 전 소유한 기간 [제목개정 2024. 4. 15.] 제5조(농지이양은퇴 후의 경작허용 규모 등) ① 영 제7조제1호가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4. 4. 15.> - 영 제6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천제곱미터 미만 - 영 제6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와 다른 농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3천제곱미터 이하. 이 경우 영 제6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는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제1호나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2. 제12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일 현재 임차 또는 사용차(使用借) 중인 농지가 없을 것 [제목개정 2024. 3. 26.]	〈개정 2013. 3. 23., 2024. 4. 15.〉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호지구로 지정된 경우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 5.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경우 6.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제7조의2 또는 제8조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로 지정된 경우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치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산정기준)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농지이양 면적당 지급 단가는 농지이양 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중에 농작물을 경작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과 임대하여 얻을 수 있는 평균소득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4. 3. 26., 2025. 12. 30.> ②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은 제1항에 따른 지급 단가에 농지이양 면적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 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3. 3. 23., 2024. 3. 26.> ③ 삭제 <2015. 4. 7.> ④ 제2항에 따른 농지이양 면적의 상한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4. 7., 2024. 3. 26.>	10.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전원개발사업구역으로 포함되거나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11.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사업구역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1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된 경우 [제목개정 2024. 4. 15.] 제6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기간) 영 제8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6.22., 2013.3.23> [제목개정 2024. 4. 15.] 제6조의2(농지이양은퇴 면적의 상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 면적의 상한은 매도한 농지와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농지를 합하여 4만제곱미터로 한다. [본조신설 2015.4.7.], [제목개정 2024. 4. 15.]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영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제목개정 2024. 3. 26.]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4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을 공사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3. 26.> [제목개정 2024. 3. 26.]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4. 4. 15.] 제7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① 영 제9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농지이양은퇴보조금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7., 2022. 5. 18., 2024. 4. 15.> 1. 농지대장 등본 2. 매매계약서 사본(영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업농업인등에게 직접 매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신청서를 받은 공사의 담당직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7., 2018. 3. 20., 2024. 4. 15.> 1.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제10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공사는 제9조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2., 2013. 3. 23.> 1. 신청인이 농지이양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논·밭·과수원을 직접 경작하였거나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신청인이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경작이 허용되는 농지 외의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신청인이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고 있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제목개정 2024. 3. 26.]	증명서.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말한다. 2.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5항에 따른 농업경영체 증명서 [제목개정 2024. 4. 15.]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제11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공사는 제10조에 따른 조사 결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3. 26.> [제목개정 2024. 3. 26.] 제12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① 공사는 제11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장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이양한 논·밭·과수원의 표시 2.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액 및 지급기간 3. 약정의 해지 및 해제에 관한 사항 4.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제8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① 공사는 제7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5.> ② 공사는 영 제11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4. 15.> [제목개정 2024. 4. 15.] 제9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영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액을 연령별 지급기간의 총 월수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 4. 15.> [제목개정 2024. 4. 15.]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5.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4. 3. 26.] 제13조(약정의 해지 및 해제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2., 2015. 4. 7., 2024. 3. 26.> 1. 약정의 상대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농지 외의 농지(임차 또는 사용차한 농지를 포함한다)를 경작하는 경우 3. 농지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임대 또는 임대위탁 계약이 해지된 경우 4.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농지이양한 논·밭·과수원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5.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6. 임대 또는 임대위탁으로 농지이양한 농지에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등의 영농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② 공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약정을 해지하거나 해제하지 아니하고 약정의 승계 또는 변경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2., 2024. 3. 26.> 1.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을 매도에 의한 농지이양을 하기 위하여 공사의 동의를 받아 임대 또는 임대위탁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임대 또는 임대위탁한 논·밭·과수원이 증여 또는 상속으로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3. 약정의 상대방이 사망하여 그 배우자가 약정을 승계하는 경우 제14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 등) ① 공사는 제13조에 따라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1. 약정을 해지한 경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약정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지일까지 지급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환수 2. 약정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약정을 해제한 경우: 농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농지이양은퇴보조금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 환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연 10퍼센트의 이율로 산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환수 ② 제1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중단 및 환수에 대한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24. 3. 26.> [제목개정 2024. 3. 26.] 제15조(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① 공사는 제12조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약정의 상대방이 약정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② 공사는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받은 자 및 전업농업인 등에 관한 사항을 전산으로 처리하여 관리하는 등 적절한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 [제목개정 2024. 3. 26.] 제3장 삭제 <2020.4.28.> 제16조 삭제 <2020.4.28.> 제17조 삭제 <2020.4.2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제18조 삭제 <2020.4.28.>	
제19조 삭제 <2020.4.28.>	제10조 삭제 <2024. 4. 15.>
제20조 삭제 <2020.4.28.>	제11조 삭제 <2024. 4. 15.>
제21조 삭제 <2020.4.28.>	제12조 삭제 <2024. 4. 15.>
제22조 삭제 <2020.4.28.>	
제23조 삭제 <2020.4.28.>	
제3장익2 삭제 <2020.4.28.>	
제23조의2 삭제 <2020.4.28.>	제12조의2 삭제 <2024. 4. 15.>
제23조의3 삭제 <2020.4.28.>	
제23조의4 삭제 <2020.4.28.>	
제23조의5 삭제 <2020.4.28.>	제12조의3 삭제 <2024. 4. 15.>
제23조의6 삭제 <2020.4.28.>	제12조의4 삭제 <2024. 4. 15.>
제23조의7 삭제 <2020.4.28.>	
제23조의8 삭제 <2020.4.2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제4장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제5장 · 제5장의2 삭제 제24조 ~ 제40조의10 생략 제6장 보칙 제41조(보고) ①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4. 3. 26.> 1.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4. 조건불리지역 선정에 관한 자료 분석 및 관리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22., 2013. 3. 23., 2014. 3. 18., 2020. 4. 28.> 1.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2.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신청에 관한 사항	제12조의5 ~ 제26조 생략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3. 그 밖에 조건불리보조금 지급 및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2조(소요경비의 지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사에 제4조 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및 조건불리지역의 선정에 관한 업무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4. 3. 26.> 제4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8.3., 2018.3.20.> 1. 삭제 <2020.4.28.> 2. 삭제 <2020.4.28.> 3. 삭제 <2020.4.28.> 3의2. 삭제 <2020.4.28.> 3의3. 삭제 <2020.4.28.> 3의4. 삭제 <2020.4.28.> 4. 제30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6. 제33조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 중단, 환수 및 지급 제한에 관한 사무 7. 삭제 <2020.4.28.> 8. 삭제 <2020.4.28.> 9. 삭제 <2020.4.28.> 10. 삭제 <2020.4.28.> 11. 삭제 <2020.4.28.> 12. 삭제 <2020.4.28.> ②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신청 농업인등의 자격 유무 및 토지의 적격 여부 확인에 관한 사무 2.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 접수에 관한 사무 3. 삭제 <2020.4.28.> 4. 삭제 <2020.4.28.> 5. 삭제 <2020.4.28.> 6. 삭제 <2020.4.28.> ③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제10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조사에 관한 사무 - 제11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 - 제12조제1항에 따른 약정 체결 및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무 - 제13조에 따른 약정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한 사무 - 제14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무 - 제15조에 따른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 삭제 <2016.5.3.>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5.3.> -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토지의 관리에 대한 이행 여부 확인·점검 및 그 결과 통보에 관한 사무 - 삭제 <2020.4.28.> - 삭제 <2020.4.2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⑤ 삭제 <2016.5.3.> [전문개정 2015. 4. 7.] 제44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보조금”이라 한다) 지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매년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을 신청한 자 및 보조금을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4.7., 2020.4.28.> 1. 농업인: 성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 2.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법인명, 농지지번, 신청면적, 재배품목 및 수령금액 ②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서 공개한 정보 외에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4.7., 2020.4.28.>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서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 등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신청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4.7>	제27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는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및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열람하게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5. 4. 7., 2016. 5. 4., 2024. 4. 15.> 1. 보조금의 신청정보 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매월 말일 나. 삭제 <2024. 4. 15.> 다. 조건불리보조금: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약정신청서 제출을 마감한 날 라. 삭제 <2024. 4. 15.> 마. 삭제 <2024. 4. 15.> 2. 보조금의 수령정보 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을 지급한 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본조신설 2012.6.22., [제목개정 2015.4.7] 제45조(직접지불제도 관련 자료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직접지불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3.18]	나. 삭제 <2024. 4. 15.> 다. 조건불리보조금: 영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보 조금을 지급한 날 라. 삭제 <2024. 4. 15.> 마. 삭제 <2024. 4. 15.>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정보 및 수령정보를 열람하 려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한 다. <개정 2015. 4.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열람방법과 열람 신청자의 개인정보 제공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6. 22.]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45호, 2024. 4. 15., 일부개정]

[별표 1] <개정 2024. 4. 15.>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연령별 지급기간(제6조 관련)

1. 지급기간

연 령	지 급 기 간
75세 이하	10년
76세	9년
77세	8년
78세	7년
79세	6년
80세	5년
81세	4년
82세	3년
83세	2년
84세	1년

2. 지급기간의 계산 방법

- 지급기간은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약정을 체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한다.

IV 기타 법령 발췌

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2025. 7. 22.>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농업인의 기준) 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15., 2015.12.22.>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② 삭제 <2015.12.22.>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제목개정 2015.12.22.]

제26조(전업농업인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문농업기술 및 경영능력을 갖추고 농업 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이하 “전업농업인”이라 한다)을 육성하는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2015.6.22.>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업농업인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2013.3.23., 2015.6.22.>

[제목개정 2015.6.22.]

제28조(농업 관련 조합법인 및 회사법인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수출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 및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의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목개정 2015.6.22.]

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삭제 <2020.5.19.>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유통·가공·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공동으로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생산자단체"라 한다)는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營農組合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5.1.6., 2015.6.22.>

[제목개정 2021. 8. 17.]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 등) ①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農業會社法人)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1.6.>

[제목개정 2021. 8. 17.]

③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14., 2013.3.23., 2015.1.20.>

1. "농업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말한다.
2. "공사관리지역"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와 농업기반 시설로부터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지역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5. "농업법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전업농업인(專業農業者)"이란 농업발전에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와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을 말한다.

제18조(농지매매사업 등) ① 공사는 전업농업인의 육성과 농업인이 아닌 자의 농지소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인이 아니거나 직업전환 또는 은퇴하려는 농업인 등의 농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1. 해당 농지를 매입하여 전업농업인으로 육성하려는 대상자(이하 "전업농 육성 대상자"라 한다) 및 농업법인에게 우선적으로 매도하는 사업
2.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해당 농지의 매입을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이 해당 농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의 지원

② 공사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에게 농지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 및 농지 매매·알선사업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제2조(전업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농지와 1명 이상의 농업노동력을 보유한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9.8.26.>

1. 벼를 주요 재배작물로 하는 농업인: 6만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2. 그 밖의 농업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농지
- [전문개정 2009.6.29.]

제12조(전업농 육성 대상자 등의 선정기준)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9.8.26.>

1. 전업농 육성 대상자
 - 가.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농업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업농업인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규모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업인일 것
 - 나. 영농 의욕이 강하고 과학영농기술의 개발 등으로 농업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일 것

2. 농업법인

벼, 감귤,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재배작물을 주요 재배작목으로 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 및 농업법인의 세부적인 선정기준, 선정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6.29.]

④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2. 21., 2009. 4. 1., 2009. 5. 27., 2018. 12. 24., 2021. 8. 17., 2024. 1. 2.>

1. “농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 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가. 삭제 <2009. 5. 27.>
 - 나. 삭제 <2009. 5. 27.>
4.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 6의2. “농지개량”이란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 농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농지의 구획을 정리하거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나.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하여 해당 농지에서 객토·성토 또는 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7.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나목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轉用)으로 보지 아니한다.
8. “주말·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2조(농지의 범위) ①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의 재배지로 한다. <개정 2009.11.26., 2019.6.25.>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과수·뽕나무·유실수 그 밖의 생육기간이 2년 이상인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조경목적으로 식재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서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2016.1.19.>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③ 법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2.7.10., 2013.3.23., 2013.12.30., 2014.12.30., 2019.7.2.>

1.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유지(溜池),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 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법 제2조제1호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에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가.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나. 축사·곤충사육사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부속시설
 - 다. 간이퇴비장
 - 라.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8. 12. 29., 2009. 5. 27., 2015. 1. 20., 2015. 7. 20., 2020. 2. 11., 2023. 8. 16.>

1. 제6조제2항제1호·제4호부터 제9호까지·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5의2. 제6조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0.>

제24조(임대차·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을 말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를 제외한다)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20.2.11.>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약정된 것을 본다. 다만,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③ 임대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0.2.11.>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3. 3. 23., 2023. 8. 16.>

1. 삭제 <2023. 8. 16.>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삭제 <2024. 1. 2.>

②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5. 27., 2011. 4. 14., 2013. 3. 23., 2024. 1. 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에 따른 도시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때에 해당 구역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9.5.27., 2012.1.17.>

1.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축산업용 시설(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개량시설과 농축산물 생산시설은 제외한다), 농수산물 유통·가공 시설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3. 농수산 관련 연구 시설과 양어장·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 ②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2. 11.>
-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와 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의 설치 제한, 설치자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2. 11.>

제43조(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6조제2항제9호의2에 해당하는 농지를 전용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제49조(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 소유 실태와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農地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8.17.>

- ②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에는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소유자·임대차 정보·농업진흥지역 여부 등을 포함한다. <신설 2021. 8. 17.>
- ③ 시·구·읍·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을 작성·정리하거나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농지 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그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 ④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그 변동사항을 지체 없이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 ⑤ 제1항의 농지대장에 적을 사항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처리하는 경우 그 농지 대장 파일(자기디스크나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기록하여 보관 하는 농지대장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농지대장으로 본다. <개정 2021. 8. 17.>
- ⑥ 농지대장의 서식·작성·관리와 전산정보처리조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 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8. 17.>
- [제목개정 2021. 8. 17.]

제50조(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 시·구·읍·면의 장은 농지대장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8. 17.>

② 시·구·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목개정 2021. 8. 17.]

제54조(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 또는 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8. 17.>

1. 삭제 <2021. 8. 17.>
2. 삭제 <2021. 8. 17.>
3. 삭제 <2021. 8. 17.>
4. 삭제 <2021. 8. 17.>
5. 삭제 <2021. 8. 17.>
6. 삭제 <2021. 8. 17.>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일정기간 내에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⑤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검사·조사 및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1. 8. 17.>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8. 17.>

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13.7.17., 2015.7.24., 2020.2.18., 2022. 6. 10.>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제67조(지목의 종류) ①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垓)·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堤防)·하천·구거(溝渠)·유지(溜池)·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는 제외한다)·약초·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食用)으로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마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
3. 과수원
사과·배·밤·호두·곶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⑥ 농어촌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14., 2012. 2. 17., 2015. 1. 6., 2015. 6. 22., 2019. 1. 15., 2020. 2. 11., 2024. 1. 2.>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 생산단지의 조성 및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洪水位: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⑦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 ①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관광지등"이라 한다)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5., 2009.3.25., 2018.6.12.>

⑧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와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 및 같은 항 각 호 각 목의 용도지역을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 [전문개정 2009.2.6.]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7. 4. 18., 2023. 5. 16.>

1. 경관지구: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방화지구: 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방재지구: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중요 시설물(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7. 개발진흥지구: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 및 교육 환경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오염 물질 배출시설,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9. 복합용도지구: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 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의 방재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공업지역·관리지역에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정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4. 18.>

[전문개정 2009. 2. 6.]

9]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② 상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미리 하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09.12.29., 2021.1.12.>

1.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

②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이하 이 조 및 제8조 및 제10조의2에서 "대도시"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08.3.28., 2009.12.29., 2021. 1. 12., 2021. 4. 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29., 2013.3.23.>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4.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시장(대도시 시장을 제외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20. 6. 9.>

⑤ 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및 규모, 요청 절차, 제출 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①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①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이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6.12.20.>

제7조의2(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①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에 지정하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가 지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6.12.20.>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①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개정 2011.8.4.>

1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장의 지방 이전 촉진, 공해업종의 집산화 등의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장용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지역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1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그 시·도지사를 대신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25. 10. 1.>

14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전원개발사업자는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원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전원개발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원설비의 개요
2. 전원개발사업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전원개발사업의 시행기간
4. 전원개발사업의 소요 자금 및 그 조달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6. 국토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원개발사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조(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의 지정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원개발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15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① 제8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 구역, 사업 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구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6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주거기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중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하 "택지수급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지정한 택지개발지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지정권자를 정한다. <개정 2015.6.22.>

② 제1항의 경우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택지수급계획에서 정한 해당 시·도의 계획량을 초과하여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지정하려는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미리 「주거기본법」 제8조에 따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2.>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1. 국가가 택지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제7조제1항제2호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택지수급계획상 택지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17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을 말한다.
5.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6.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7. "중앙관서의 장"이란 「국가재정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8. "보조금수령자"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제28조에 따라 확정된 경우에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명령을 한 경우에 그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가 제30조제2항에 따른 것일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신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환하지 아니한 초과액의 사용명세서(과목별로 금액 및 구체적 이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제4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초과액을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중복되거나 과다하게 보조금 예산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해당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유사한 사업에 초과액을 사용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7.25.]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6.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제33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 ③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한 계약의 입찰·낙찰·체결·이행 과정에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이하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이라 한다)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5.>
-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에 대하여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기획재정부장관 및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보조사업자등 또는 부정수급 관여 계약업체등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수행 대상 배제 및 수급 제한 기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7.1.4., 2021.6.15.>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1.6.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 배제 및 보조금·간접보조금 수급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기준과 이와 관련된 정보의 통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15.>

[본조신설 2016.1.28.]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전문개정 2011. 7. 25.]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8.]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환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삭감 또는 변경·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한 반환명령의 적정성을 조사·확인한 후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2.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3.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
5.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가산금의 산정방법 및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5.8., 2021.12.14.>

②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6. 4. 28.]

제33조의3(강제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24., 2020.6.9.>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31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2. 보조금수령자가 제33조에 따른 반환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보조사업자등이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가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본조신설 2016. 1. 28.]

[별표 8] <개정 2021. 12. 14.>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재부가금 부과사유 및 부과 대상자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0%
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00%
	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법령을 위반한 경우	200%
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